

대구지역사무소
개소기념 주간행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개소기념 주간행사

지역 인권실태 설명회



- 일 시 : 2007. 8. 30. 15:00 - 18:00
- 장 소 : 대구지역사무소 (호수빌딩) 19층
(산업안전관리공단 교육장)

목 차



▣ 설명회 일정	4
▣ 발제문	7
◎ 장애 분야 - 서준호 脈(맥)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현황	9
◎ 이주노동자 분야 - 박순중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표 이주노동자 인권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들	19
◎ 아동·청소년 분야 - 이영은 (사) 반딧불이 참여인권국장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29
◎ 쪽방·노숙인 분야 - 윤승걸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쪽방·노숙인 지원(의료 포함) 체계 현황	41
◎ 주거권 분야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부동산으로 일그러진 한국사회, 이제 주거‘권’을 제기하자 -	53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67

설명회 일정

구분	세 부 일 정	참고 사항
2007. 8. 30. 15:00	등 록	* 메일링리스트 배포
15:00 - 15: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사회자
15:10 - 16:10	【장애 분야】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현황	서준호 脈(맥)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주노동자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개선요구사항들	박순종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아동·청소년 분야】	이영은 (사) 빈딧불이
16:20 - 16:30	휴 식 (다과와 함께) * 참가자 자율로 사진 포스터 전시회 등 참가	
16:30 - 17:30	【쪽방·노숙인 분야】 쪽방·노숙인 지원체계 현황	윤승걸 대구쪽방상담소
	【주거권 분야】 주거권 실태 및 개선과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17:30 - 18:00	질의 및 응답	

인사말

발 제 원 고

- ⊙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현황
- ⊙ 이주노동자 인권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들
- ⊙ (아동 청소년 분야 발제문 제목)
- ⊙ 쪽방·노숙인 지원(의료 포함) 체계 현황
- ⊙ 부동산으로 일그러진 한국사회, 이제 주거 '권' 을 제기하자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현황

서준호 脈(맥)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목 차 -

1. 저상 버스
2. 특별 교통 수단
3. 대구 지하철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현황

서준호 맥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비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동에 제약을 받아본 적이 없는 비장애인들의 처지에서 보면, 이동권이 왜 필요한지 알 턱이 없다. 그들은 사람이 공기를 마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몸을 움직여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을 특별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장애인 세계에서는 이동권이라는 말은 무척 낮은 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무엇보다 절박한 권리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동을 하지 못한다면 교육, 노동, 사회 참여는 고사하고 생리 현상조차 제때 해결하겠습니까? 이동권을 생존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곳곳에 턱과 장벽을 만들어 놓았고, 버스는 전혀 탈 수 없고, 지하철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대구지역 이동권과 관련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지하철(1, 2호선) 편의시설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상버스

1) 대구시 저상버스 현황과 운영의 문제점 :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대구시는 2004년 하반기부터 저상버스 2대를 노선에 투입하여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 2005년에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운행 초기부터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2007년 현재 대구시 저상버스는 24대로 서울특별시 및 6대광역시 중 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부산시 다음으로 꼴찌를 겨우 면한 수준이다. 대구시는 2005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하였지만 부산시의 경우 대구시보다 1년 뒤인 2006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부산시가 1년 늦게 저상버스를 도입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구시 저상버스 대수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시 보다 인구가 적은 대전시와 비교해도 저상버스 대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10대를 도입하고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에서 저상버스를 50%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두 번째로 대구DPI는 2006년 2월~2007년 1월까지 대구시 저상버스 운행실태를 지난 1월 조사하였다. 타 도시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저상버스 대수 보다 심각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저상버스 운행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내버스 업체가 저상버스 운행 경비를 절약 하기 위해 일요일의 경우 저상버스 운영을 기피했고,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운행하지 않은 일요일이 18번으로 일요일 대부분은 저상버스가 한 대도 운행하지 않았다. 결국 대구시가 저상버스 도입 외 이차적으로 운행에 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교통약자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저상버스 현황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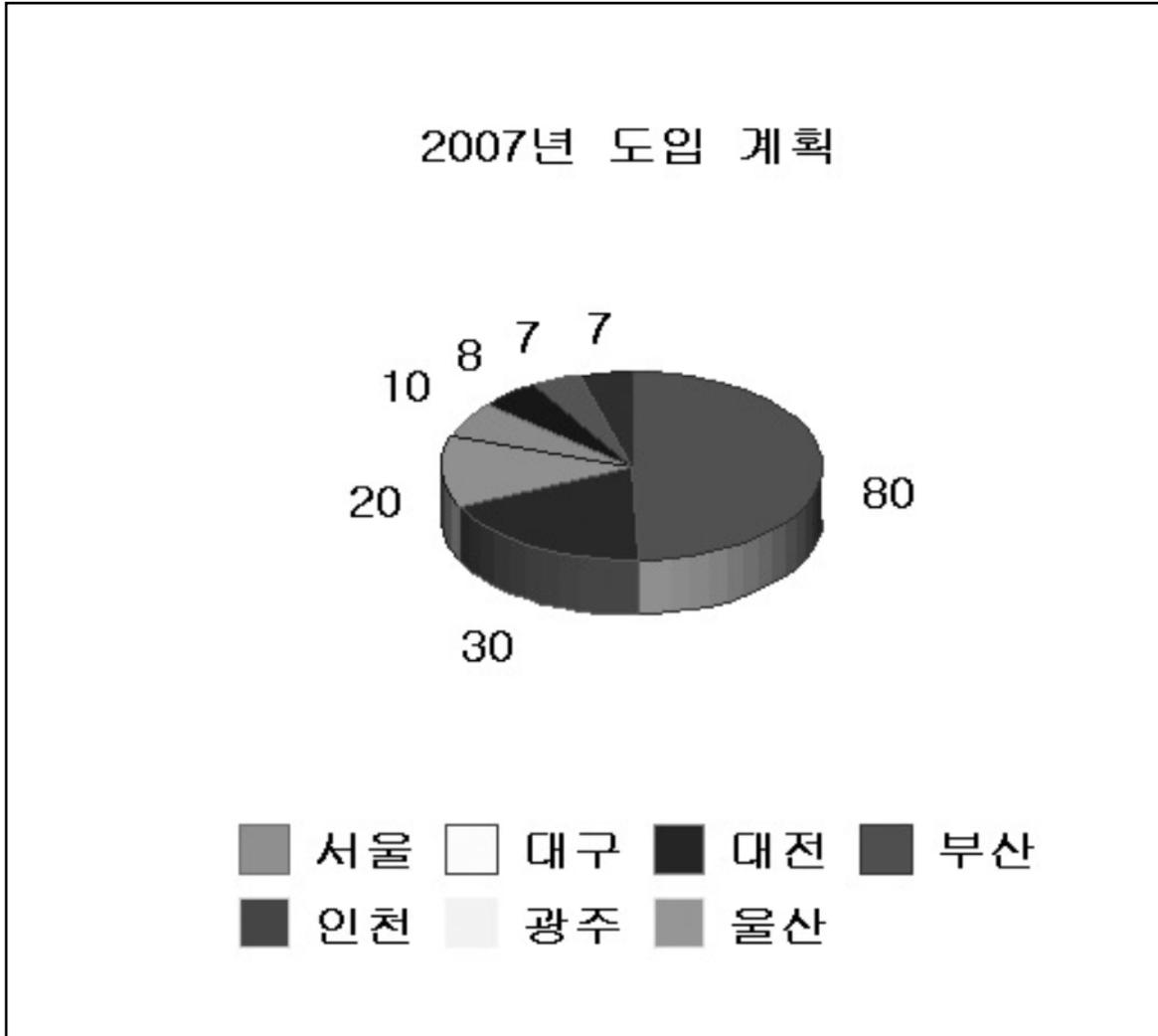


[cf.비율=저상버스 운행 대수/시내버스 총 운행 대수]

(자료 : 대구DPI / 2007년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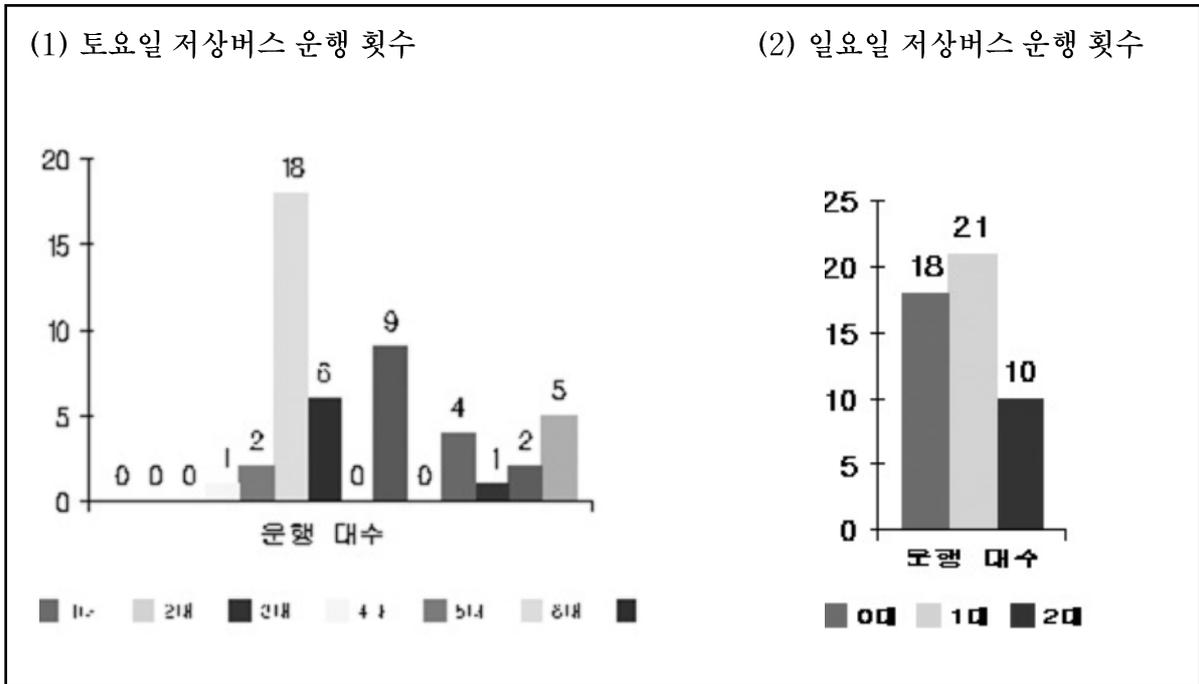
2007년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 (표 2)

(단위: 대수)



(자료 : 대구DPI / 2007년 1월 기준)

2006년 2월19일 ~ 2007년 1월 27일
 대구시 저상버스 운행 현황 (※토·일요일) (표 3)



(자료 : 대구DPI)

2) 도로환경과 정류소 문제점 :

대구시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도로환경여건 및 정류장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 보다 차체가 길고 낮아 상대적으로 도로가 좁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노선은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 버스정류장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들과 정류장 주변의 고르지 못한 인도 보도블럭 등으로 탑승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광주시의 경우 버스 정류장에 정차 특별관리구역인 레드존(Red Zone)을 2005년부터 설치하여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고 버스의 정확한 정차를 유도해 이용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시행중이다.



<사진1>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타는 모습

휠체어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타려면 저상버스 내부의 램프(경사판)가 외부로 나와 인도와 연결된다. 저상버스가 불법 주차차 차량으로 정류장에 근접할 수 없을 경우 휠체어 장애인은 버스에 탈 수 없다. (사진: 한국일보)

대구는 작년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중구 밀리오레와 북구 팔달시장, 동구청 앞 등 15곳에 레드존을 설치하였다.¹⁾

2. 특별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사전에 특별교통서비스 신청을 하면 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 심의를 통해서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교통약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은 사전에 예약제로 24시간 운행이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과 승하차를 지원해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5조(특별교통수단의운행대수)²⁾에서 인구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100만이상의 광역시지만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올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밴택시 5대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타시도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150대, 인천광역시 5대, 대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대전광역시 5대, 부산광역시 10대(표4 참조)로 광역시 중 하위권 수준이다. 대구시는 2013년도까지 80대 기준으로 43.5% 도입할 계획이다. 아직 부족한 저상버스 대수로 원활히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하철 역시 한정된 노선으로 인해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면 지금과 같이 저상버스와 지하철 노선 외의 곳도 교통약자가 쉽고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이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콜밴택시 운영현황 (표 4)

1) 2006년 6월 대구광역시 발표 기준

2)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대수를 말한다.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80대
2.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 50대
3.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지역	행정 구역	운행 대수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전역	150대	
	지역총계	150대	
인천광역시	인천전역	5대	
	지역총계	5대	
대전광역시	대전전역	5대	
	지역총계	5대	
광주광역시	광주전역	0대	
	지역총계	0대	
울산광역시	울산전역	0대	2007년 10대 시범사업
	지역총계	0대	
대구광역시	대구전역	0대	
	지역총계	0대	
부산광역시	부산전역	10대	2007년 50대로 확대
	지역총계	10대	
경상남도	창 원	5대	
	김 해	3대	
	마 산	3대	
	사 천	2대	
	진 주	1대	2007년 1대 추가 계획
	각 지역	1대 씩	
	지역 총계	30대	
경상북도	구미	1대	
	포항	1대	
	경산	1대	
	경주	1대	
	지역 총계	4대	

(출처 :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충제 소장 / 2006년 11월 기준)

3. 대구 지하철

대구의 경우, 1997년 1호선이 개통된 이래 하루 평균 이용객이 250,000명(2005년 기

준)에 이를 정도로 이제 지하철은 지역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다. 대구지하철 1호선의 경우 동쪽 종점인 안심역에서 서쪽 종점인 대곡까지 50분이면 갈 수 있다. 버스는 물론 택시나 승용차에 비해서도 빠른 편이다. 그리고 지하철은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교통수단이다. 이처럼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우리 지역 장애인들도 지하철을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특히, 저상버스 운영이 매우 저조하고 콜밴 등 특수수송차량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지역 장애인들의 지하철 의존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1호선 개통 이후 2호선이 추가로 건설되는 8년 동안 편의시설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1호선의 경우 30개 역사 가운데 3개 역사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2호선은 모든 역사에 1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1호선 30개 역사에서 장애인 화장실은 33개에 불과하다.(즉, 대부분 역사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는 뜻이다.) 반면, 2호선 역사의 경우 전체 26개 역사에서 장애인 화장실은 43개소로 늘어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의 수가 다소 줄어들었다. 게다가 1호선에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스크린 도어(screen door)가 2호선에는 2개의 역사에 설치되어 있다.

대구지하철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표 5)

종 류	1호선		2호선		비 고
	설치역 수	수량	설치역 수	수량	
휠체어리프트(W/L)	30	117대	-	-	
엘리베이터(E/V)	3	5대	26	69대	1호선은 대구역, 동대구역, 안심역만 설치
에스컬레이트(E/S)	12	90대	26	208대	
스크린도어	-	-	2	2개소	다사역, 대실역(2호선)
전용개찰구	30	46개소	-	-	
전용화장실	30	33개소	26	43개소	
픽토그램	30	94개소	24	56개소	화장실, 매표실
점자유도블럭	30	다량	26	다량	
음향유도기	-	-	26	148개	

(출처 : 대구지하철공사 홈페이지 수정)

엘리베이터는 지하철 이용 장애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편의시설이다. 하지만, 대구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표6)에서 보듯이, 대구지하철 1호선과 2호선 56개 역사에는 74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역사 당 1.32대 꼴로 불과한 셈이다. 2008년까지 계획대로 설치하더라도 역사 당 1.52대가 된다.

특히, 1호선의 상황만 보면 더욱 심각하다. 전 역사에 2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2호선과 달리, 1호선은 2006년 현재 30개에 엘리베이터 5대가 설치되어 역사 당 0.16개이며, 계획대로 2008년까지 11대를 더 설치하더라도 역사 당 0.53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구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과 계획은 다른 대도시 지하철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지하철 접근성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교통약자들이 힘들게 계단을 오르거나 느리고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 승강기 설치 현황 및 계획 (표 6)

단위:대

지자체 (역수)	현황 (승강기수/역)	연도별 설치 계획					계 (승강기수/역)
		'05	'06	'07	'08	계	
서울 (263)	455 (1.73대)	93	23	-	-	116	571 (2.17대)
부산 (73)	41 (0.56대)	16	45	57	128	246	287 (3.93대)
대구 (56)	74 (1.32대)	-	3	3	5	11	85 (1.52대)
인천 (22)	35 (1.59대)	4	5	4	-	13	48 (2.18대)
광주 (13)	35 (2.69대)	-	-	-	-	-	35 (2.69대)

(출처 : 건설교통부 집계 수정 / 2005년 기준)

대구지하철본부는 올해 반월당1호선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 추가로 아양교역, 월촌역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엘리베이터 미설치 27개역 중 80% 수준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들

박 순 중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표

이주노동자 인권현황 및 개선 과제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 순 중목사

1,000만명의 해외거주 한국인이 있는 세계화 시대의 현실입니다.

미국내에 50만명의 한국인 동포들이 미등록 (소위, 불법) 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중 5년이상 미등록으로 있는 한국인이 20여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연간 10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고, 그중 이주노동자들은 40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 중에 50%를 넘어선 22만여명이 미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1988년을 지나면서 많은 외국 인력의 일손을 필요로 했습니다. 스스로 중산층이 되었다고 여긴 한국인들은 소위 영세한 3D업종에서 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저임금의 인력을 요구하였던바, 결국 외국 인력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혹은 가장 악질적인 해외기업투자업체의 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외국인력을 한국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10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수감에 목인체로 강제추방을 당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산재사망자로, 산재 장애자로, 원인모를 죽음으로 보상도 되지 않은 채로 죽어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사회는 스스로 민주사회 선진사회 인권사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들이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자체가 정의는 아닙니다. 인권은 법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현재의 한국법이 한국인의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국법에 인권을 맞추라는 것은 작은 신발에 큰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신발에 큰 발을 신도록 끼우라고 하면 발을 깎아야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발을 깎는 것이 아니라, 발에 맞는 신발을 준비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여러 요구사항들은 한국의 제도적인 부분에 의하여 인권이 억압당하고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략히 점검한 것입니다.

1.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불법체류자라로 분류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합법적인 비자기간을 마칠 때에 귀국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로만 취급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주외국인의 현실과 인간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한국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3년 일하고 귀국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너무나 단순한 기계적인 대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50만명이 넘는 상황을 보더라도, 한번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고향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년동안 돈벌고 귀국하면 된다는 식의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계산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 계산식 역시 명칭하기 그지없습니다. 3년동안 잘 숙련되고, 한국 음식과 언어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출국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본인이 원하면 더 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이득)는 낳게 된다는 계산도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3년짜리 소모품이 아니다. 현재 20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한 원인은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인력정책의 제도적 결과이지 미등록된 이주노동자의 개인적인 결과로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사회에 귀중한 이웃이고, 한국사회를 받치고 있는 든든한 산업인력입니다. 이들의 밤낮없이 고생한 수고와 고통에 우리는 감사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 체류비자를 주는 것은 이주민의 인권에를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2.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범죄인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주외국인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3년동안 일하고 귀국하는 소모품으로 보는 입장에서 강제추방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2007년 8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추방 정책은 반쪽자리 고용허가제도를 강제추방이라는 억압적인 정책으로 완성해 보고자 하는 무리한 시도일 뿐입니다.

지난 2월, 10명의 사망 희생자를 발생시킨 여수보호소내의 화재참사 사건을 유가족 보상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하자마자 튀어나온 인권유린정책입니다. 강제추방정책이 빚어낸 참사를 그렇게도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우리는 돼지가 될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강제추방 단속이 시작되면서 빚어진 사망사건 부상사건은 20여건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10만여명을 수감 채워 강제추방 하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였기에 그런 처우를 당하여야 했습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주간 야간 밤낮으로 휴무일도 부족한 상태에서, 욕 들어

가며, 멸시 당하며, 공장기숙사에서 살며, 죽도록 일한 것이 이주노동자들 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휴가갈 수 있는 비자를 주지는 못할망정 강제추방 시켰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부자나라의 제도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유린당한 것입니다.

3. 사업장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도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은 사업장 이전을 3회로 제한 한 것입니다. 그 3회의 이동도 이주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억압적이거나, 체불임금, 파산 등 고용업주의 이유로 인한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하에 참으로 불행하게도 체불임금, 파산, 등으로 인한 사유가 4회가 넘어설 때에도 이주노동자는 출국해야하거나 미등록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미와 신체건강과 직원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장이전이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하는데도 이것을 불허하였습니다. 여기가 옛날의 군대였습니다니까? 요즘은 한국 군대도 웬만하면 자기 적성과 특기를 살리도록하고, 왕따 등의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상담 및 전출을 하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 이전에 관한 자유는 노예에 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4. 주 1회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근을 하면 돈을 준다지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휴일이 월2회, 혹은 1회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인간을 일하는 기계나 돈버는 기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365일, 하루 24시간 이상 기계를 반드시 가동하여야 손실이 적은 사업장에서는 (어쩌면) 반드시 3교대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5. 외국인부부의 아기들이 등록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미등록인 이유로 인하여 그 아기들도 미등록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는 외국인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미등록부모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됩니까?

국적은 주지 못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주고, 거주권은 주어야 합니다.

6. 외국인 부부의 아기들이 (다른 귀국자와 함께) 부모없이 혼자 귀국하게 될 때에, 귀국동반자의 자녀로 가짜 임시여행증을 만들어서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아기의 여권을 따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여권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아기만 귀국시키는 베트남 미등록 부모들은 항상 가짜 출생증명서를 병원의 의사들에게서 받아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외국인들의 사정이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출생증명서를 마음대로 조작, 남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반드시 부모와 동반해서 아기가 귀국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베트남으로 귀국한 아기들의 90%이상이 가짜 부모와 귀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짜 임시여행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것은 의사들의 가짜 출생증명서에서 출발됩니다.

외국인 아기들이 귀국할 때에 아기들의 여권을 따로 만들거나, 진짜 부모가 동반할 때에 동반여권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도록 방치한다면, 기본적인 법조차도 우스운 한국이 될 것입니다.

7. 이주노동자들 모두에게 1년에 15일 이상의 귀국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군대와 자주 비교를 하는데, 군인들도 6개월이 마다하고 휴가도 나오고 외출 외박도 나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군인들보다 더 열악합니다. 12시간짜리 야간작업을 1년 내내 합니다. 12시간 불침번 선다는 군인 이야기는 전시에나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항공요금이 없어서, 비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주가 시간을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국휴가는 강제되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1년에 한번은 휴가를 보내주듯이.

8.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자동이체를 할수 있는 통장이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면, 공동체 모임의 회원으로서 연락 가능한 교회나 NGO 사무실의 주소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괜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9. 3년(5년, 10년)이상 가족을 만나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없애기 위하여 귀국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국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귀국은 할 수 없습니다.

귀국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를 주고 합법화 시켜야 합니다. 이미 10년 이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의 아픔을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안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영주비자, 혹은 자유 입국비자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 고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간 아기들이 미등록의 부모들이지만 만날 수 있도록 자유입국비자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 산재사고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 할 때에, 근로복지공단의 출입국 통보는 사후에 하든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철저한 신고정신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출입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도록 만들어서 환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입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 언제든지 출입국에서 강제단속을 나올 것 같아서 고용주들은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을 무조건 꺼려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병원치료비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휴업급여나 장애보상금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어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치료하는 기간 동안 체류를 허락하는 G-1비자를 발부 받도록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G-1비자 발급에 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무슨 신고정신이 그렇게도 강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3D업종이고 산재사고가 많고 보상금이 자꾸 올라가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 도망, 도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표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는 또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13.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부모)가족 초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14. 출입국 장기 보호 시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어려우면 외출하여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범죄자들의 교도소가 아니라, 보호소입니다.

또, 교도소로 이감 시켜서는 안됩니다.

15. 출입국에서 국가별 통역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통역인 확보가 비용적인 문제로 정말 어려우면 기본적인 사항을 각 국가별로 번역하여서 제시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은 영어를 더 모릅니다. 그런데도 영어로 통역하겠다고 고집부리면 안됩니다.

16.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고용주의 처벌을 완화내지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쓰지 말고, 오히려 즉시 인력을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의 고용주들이 인력을 빼앗기고, 과태료까지 물게 될 때에는 거의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강제출국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17. 비리 입국비용 을 근절하기 위하여 NGO감시단의 국가별 파견이 필요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하의 입국비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은 입국비용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은 입국비리 근절을 위한 의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방기하거나 함께 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NGO 감시단이 상주하며, 약 1-2개월정도만 함께 활동하고 움직여도 입국비리는 근절될 것입니다.

많은 입국비리 비용은 결국 인권억압, 미등록의 기본이 됩니다.

사실은 한국에 입국할 때에 먼저 지급받는 임금으로 500만원, 1,000만원을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8. 외국인아이들의 탁아비용지원 및 양육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아기들에 대한 한국의 복지정책은 아주 없습니다.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볼 것도 없이 제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들도 양육 보호받을 권리,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19. 경찰의 외국인범죄자 검거 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협박하여 캐묻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근절하여야 합니다.

20. 강제추방 시에 체불임금이 남아있을 때는 귀국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어도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재입국비자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1. 국가별 인권상담실, 통역인, 문화원, 휴게실, 복지시설이 각 지역별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22. 국제결혼에 있어서 매매결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월1회 이상 사회복지사가 부부상담을 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23. 합법고용주이지만,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고용주에게 돌리는 관행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폭력, 체불임금 등 위법사항이 없었는데도, 회사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용주에게 돌리게 되면, 결국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매여있는 처지가 됩니다.

24. 건설노동자들에게 강제적립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도에 의하여 건설부분에 일하러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산업연수생제도 초기에 시작되었다가 없어진 강제 저축을 하도록 만들어서 여권과 통장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위 무단퇴사하면, 이 적립금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25. 출입국의 면회실을 자유개방형 면회실로 바뀌어야 합니다.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롭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지원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보호소는 보호소이지 교도소가 아닙니다. 보호소, 쉼터에 맞는 환경을 가져야 합니다.

면회실은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손잡을 수 있고, 안아볼 수 있고,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지적들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이들은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인권향상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의 이주민 인권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주민 인권은 한국인권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영 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빈딧볼이 자치인권국장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영 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자치인권국장

나는 말이야.. 유치원 약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2년하고도 약2개월..약11년 조금 넘게 공부를 했어. 그동안 여러가질 배웠고,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또 뭐있더라.. 천부인권설,, 음.. 더 기억이 안 나네 .. 내 무식이 드러나나봐,,??아무튼 저런 것을 보면서 난 생각했었어., 인간은 항상 자유를 추구하는구나..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야지 라고 생각 했었어. 근데 현실은 너무 달라. 상상 이상으로 너무 달라. 공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 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 공부 공부 공부. 좁디 좁은 교실에 선풍기4대 히터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 가지만 배우고 있었어. '대학 가는 법'

(중략)

난 사실 평범한 여중생일 뿐이야. 노래 부르길 좋아하고, 그림 그리길 좋아하고, 수다 떨길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사회는 내게 그걸 바라지 않아. 같은 머리, 같은 옷, 그리고 같은 공부. 좁디 좁은 교실에 아이들을 구겨 넣고 선풍기 4대와, 히터2대. 그리고 선생님.. 슬퍼, 이 세상이. 그리고 너네들이. 난, 후회하진 않아. 왜냐면, 이세상은 더러우니까. 망할 세상, 망할 교육, 망할 선생, 망할 나..

미안해. 시험기간에 괜히 정신 어지럽혀서 말이야.. 그래도, 나도 엄마가 되고 싶었고 진짜 강렬한 사랑도 해보고 싶고 한 눈에 반한다는 게 뭔지도 알고 싶고, 가수도 되보고 싶었고, 화가도 되보고 싶었고, 음악가도 되보고 싶었어. 그래도 난 겁쟁이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 같아. 그럼.. 진짜 안녕..

- 2007년 4월 중간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자살한 대구 도원중 3학년 친구의 유서 중에서

▶ 들어가며

바야흐로 '인권' 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학교는 인권의 불모지로 버려져 있다. 올 봄 매주 토요일 청소년 인권 캠페인을 할려고 선전물을 주섬주섬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나치던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아직도 그카나?"였다. 그렇다. 학교는 아직도 그카고 있다. 여기에서 '그카고' 라는 지시형용사가 가리키는 '상태' 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하튼 다들 기억하고 있는 학교의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밖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 ‘나 학교 다닐 때는 더 심했다.’ ‘그래도 다 참고 다녔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추억이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는 식의 대꾸가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고 자꾸 튀겨져 나오는 것이다. 시대와 학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서 있는 걸까.

나는, 우리 단체는 온통 어른들의 이야기뿐인 세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애쓴다. (사실은 이야기를 ‘전’ 하지 않고 청소년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늘 학교와 학원과 과외 속에 묶여있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다.) 어른들이 먼저 판단하고 규정하기 전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다. 아이들의 한숨과 하소연, 때로는 그 무기력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이에 학교와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의 일상을 통해 전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례는 반딧불이에서 만난 아이들의 일상의 이야기이다.

【소통 없는 학교】

교과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은 통제의 대상일 뿐 학교에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과정을 설명해주지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소풍을 어디로 갈 것인가’ 혹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얼마 낼 것인가’ 같은 걸 제외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아무리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 해도 결과를 통보 받을 뿐이다. 그리고는 그에 따르기를 요구 받는다. 마치 학칙을 본 적도, 학칙에 동의한 적도 없지만, 선생님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학생인 이상 학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과정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데 매우 서툴고, 심지어 자기 의견이 뭔지조차 모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사례1 > 준엽이 이야기

준엽이는 동아리 부장이다. 그 동안 성적에 대한 부담에다가, 동아리 활동에 잘 따라주지 않는 부원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축제를 잘 해서 동아리 활동의 멋진 마무리를 하고 싶어 했다. 어떻게 하면 부원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 축제를 준비할까를 논의하던 끝에 수많은 의견을 제치고 자기 동아리만의 뺏지를 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며칠간의 논의 과정에 비해 결과는 좀 시시한 감이 있었지만, 대부분 비용의 문제나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진단 속에 폐기되었고 결국

가장 무난한 뺏지달기가 안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담당 선생님을 만나고 온 준엽이는 좌절했다. 담당 선생님은 학생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한 마디도 묻지 않고 뺏지는 안 된다고만 했다. 용기를 내서 그 이유를 묻기 위해 다시 교무실을 찾은 준엽에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일으킨다’고 대답하셨단다. 뭐라고 할 말을 못 찾고 옆에서 있던 준엽에게 선생님이 덧붙인 말은 “하던 대로 해.”였다. 그 때 준엽이는 뺏지가 아닌 그 어떤 안을 선택했어도 안 되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괜히 나서서 삽질했다고 준엽이는 머쓱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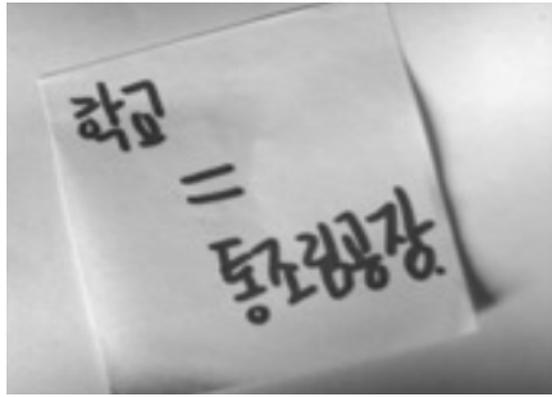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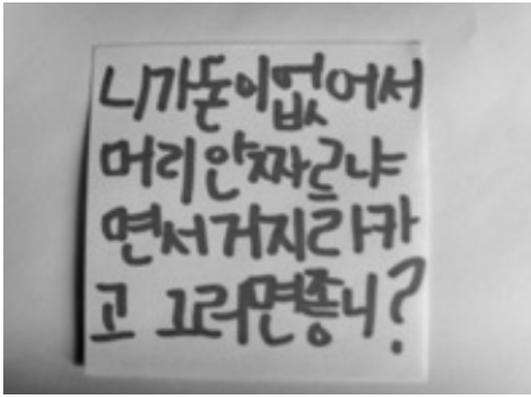
사례 2> 동민이 이야기

동민이네 신문부 동아리는 신문을 만들지 않은지 3년째이다. 학교에서 신문 만드는 데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학교 방침을 전해들은 선배들이 졸업한 동아리 선배들과 연락해서 사비를 모아서라도 신문을 내자는 의견을 모았지만, 학교에선 그것도 허락치 않았다. 사비로 신문을 내는 것은 자유지만, 그걸 학생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단다. 그나마 작년까지는 부장이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아이들도 다 그러려니 한다. 신문부가 신문을 안 만드니 활동 목적이 없고, 활동목적이 없는데도 학교에선 해마다 신입생 신청 내주면서 써클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3> 민수 이야기

민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다. 고3이 되어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당선되면서 했던 공약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의 당선 공약 중 가장 큰 것은 ‘두발 자유화’였다.) 새벽까지 야자를 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던 민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체력을 발휘해 ‘두발자유화를 위한 건의문’을 완성해서 학생부에 제출을 했다. 학교는 발각 뒤집혔고, 몇일 뒤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들을 멀티미디어실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졸업한 선배 중에 현재 대구의 모 대학 법대 교수로 계시는 분 명의를 (두발자유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반박문’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짜 주셨단다. 그 반박문의 요지는 학생의 주장은 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이며, 이런 행위 그 자체가 고등학생답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 일 이후 학생회 간부들은 하나둘 동요하고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처음에는 재반박문을 준비하면서 혼자서라도 공약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점심시간마다 교장실에 불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중간고사에, 스승의 날 행사준비까지 겹치는 통에 의욕을 잃고 포기했다.



【성적 만능주의】

많은 아이들이 성적에 따른 차별을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가장 큰 인권침해로 꼽는다. 그만큼 학생들은 성적에 민감하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은 학교의 모든 기준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차별하는 교사를 가장 싫어하면서도, 자신들도 성적으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의 학교 버전인 ‘억울하면 공부 잘 하고 보라’에 스스로 적응한다.

사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도 희생자이긴 마찬가지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성적을 올려 줄 수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고, 명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해내는 학교가 곧 명문학교가 된다.

사례 4 > 동민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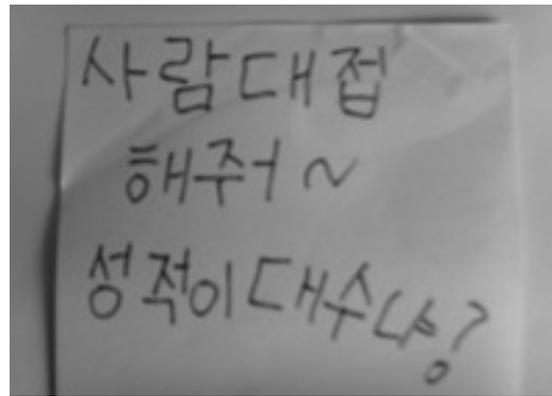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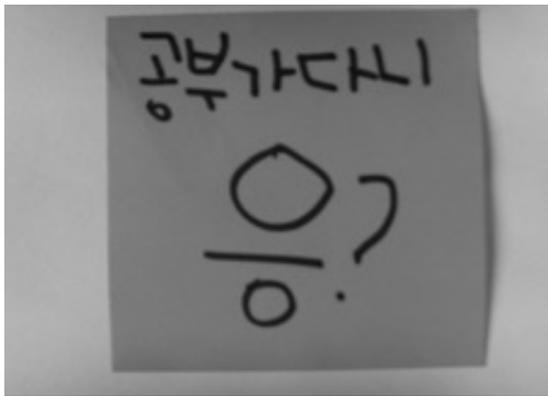
동민이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인권 축제를 준비해왔다.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지만, 이웃학교에 홍보를 가기로 한 개교기념일 날엔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그날 홍보에 참여했던 3명의 친구들은 이웃학교 교감의 신고로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잡혀가서 엄청나게 혼이 났다. 그런데 그 날 친구들이 가져갔던 디지털 카메라가 동민이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혹시 동민이도 연관이 있어 있지 않는지 말이 나왔다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1등 하는 놈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신 덕에 동민이는 한 번 불려가지도 않고 용의선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 같이 준비했던 행사 때문에 한 친구는 ‘퇴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덤덤히 자기 이야기를 전하던 동민이는 ‘어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씩씩히 웃었다.

사례 5 > 명문고 이야기

각 학교 두발 실태를 조사하러 토요일 오후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 앞을 찾아갔다. 두발 실태조사를 통해 두발문제에 관한한 어느 학교 앞의 누구를 붙잡고 묻든 학생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 학교 역시 학생들은 두발을 제한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른 학교와는 달리 ‘머리를 깎아야 하는 것은 싫지만, 자기네 학교의 두발제한 조치에는 불만이 없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많았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 대부분 대답이 비슷했다. 그래도 학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대 쯤 많이 가는 명문이 된 것 아니냐는 것.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인 학교에 분명 질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통하는 질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공존의 질서가 아닌, 명령과 통제의 획일적 질서이다.

단순한 통제기관으로서의 학교에 대한 비판은 많은 교육학자와 사회학자들도 지적한 바이다. 그러나 그 어떤 이론적인 비판보다도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듣는 학교 이야기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실감나게 전해주었다. 사실, 학생들은 이런 학교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때로 아이들은 그런 학교를 비웃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가 잘 못 된 건지조차 모르는 채로 그에 적응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다.

사례 6 > 벌점 이야기

우리 학교는 벌점제를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 중 하나이다. 처음엔 한 번 교칙을 위반하면 1점씩 받아서 5점 이상이 되면 수업도 못 받고 하루 종일 학교 운동장에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약 두 달이 지난 후 학생부에서 방송을 했는데 벌점 5점 이상이었던 규정을 3점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규정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여 수업을 들어오신 학생부장 선생님께 물어보니, 아이들이 1점, 1점 벌점 받다가 4점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조심한다는 것이다. 즉 벌 받을 애들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던 거다. 벌점제는 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인가? 선생님은 ‘벌 안 받고 싶으면 안 걸리면 된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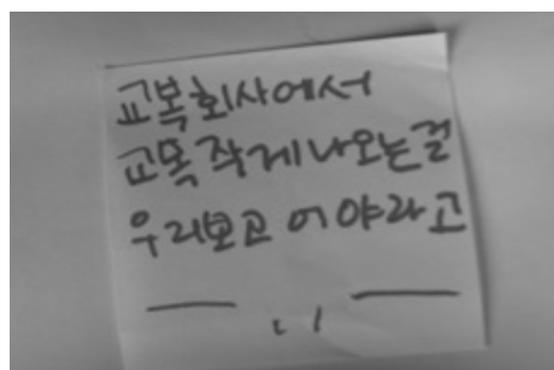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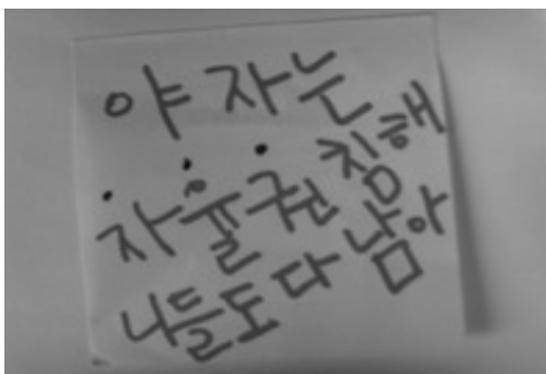
원래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 한다. 하지만, 너무 추워서 교복 위에 다른 옷을 위에 걸치고 오거나, 똥 머리(뒷머리를 두 번 접어서 묶는 방식)로 머리를 묶거나, 교복 마이 단추를 잠그지 않는 등등 오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별점을 주면서 어떻게 안 걸릴 수 있단 말인가!

사례 8 > 정은이 이야기

학교 내 CCTV 설치에 대한 인터뷰를 하던 중이었다. 교육청의 공문 내용과는 달리 CCTV 설치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던 학교는 없었다. 그나마 설치 후에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잘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다수는 모르고 있거나, 스스로 발견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독 한 친구가 선생님께 들었다고 하길래 자세한 사정을 듣게 되었다. 사연인즉 체육시간에 벤치에서 놀고 있자니, 체육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열심히 안 하면 담임선생님이 CCTV로 다 지켜보고 있다’가 혼낸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는 학교에서 놀지 못하게 감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단다.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나중에 그 학생한테 CCTV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단 것이라고 말해주니까, 상당히 황당해했다.

사례7 > 두현이 이야기

두현이는 너무나 발랄한 여고 2학년이다. 어느날 두현이랑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담임 이야기나 나왔다. 자기 담임선생님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지겨워 죽겠다는 것이다. 두현이 말로는 조·종례 시간에 하는 거야 담임 시간이니까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인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못 참겠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 ‘여자는 괜히 안 되는 공부에 애 쏟지 말고 꾸며서 시집 잘 가는 게 돈 버는 길이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매우 꾸준히 반복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면담 때 담임이 두현이가 적은 장래희망을 보면서 니 성적에 이걸 안되는 거니 일찌감치 현실적으로 고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공부 잘 하는 애들이야 웃기는 소리라고 하고 말겠지만, 성적이 깔아지는 애들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렇다고 시험 안 볼 것도 아니면서... 수업 시간엔 진도라도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두현이의 이야기였다.



【 폭력과 권위의 잘못된 만남 】

우리사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에 대해 무척 관대한 편이다. 교사의 체벌은 학교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언제라도 가학적인 폭력으로 변질된다. 실제로 많은 경우 체벌은 교사의 감정 상태나 주변 정황에 따라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며 CCTV를 단다, 스쿨 폴리스를 한다,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있지만, 오늘도 학교에선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이 횡행하면서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갖가지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교장의 권위, 교사의 권위, 학생회장의 권위, 선배의 권위에 기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물림 되면서 재생산 된다는 점이다.

사례 8 > 은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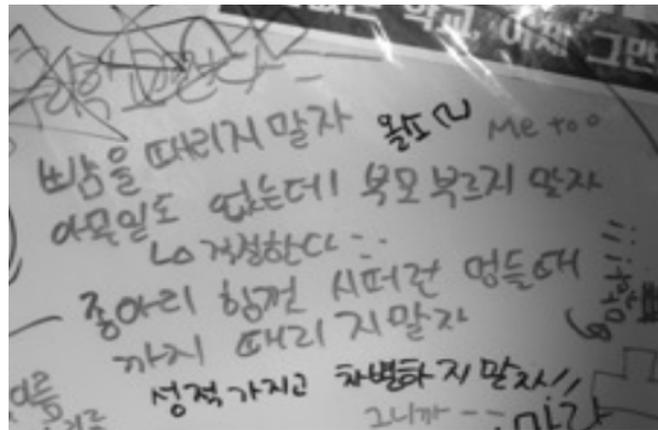
은주는 모 여고의 2학년 학생장이다. 학생회 담당 선생님은 1, 2학년 학생장을 불러 수능떡을 주문하라고 시켰다. 다음 날 떡집 아저씨가 교문 앞에 찾아왔고 아저씨와 함께 3학년 복도에 도착했을 때 수업종이 쳤다. 하는 수 없이 복도에 떡을 모아 두고 갔는데 점심시간에 은주와 1학년 학생장은 학생회 담당 선생님께 불려가서 안경이 벗겨지고 복도에 쓰러지도록 뺨을 맞았다. 떡을 교실 앞마다 나눠 놓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맞을 만한 행동이었는지 은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다음날 은주는 교무실로 찾아갔다. 선생님이 뒤늦게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은주는 학생이 교무실까지 찾아와 대든다고 떡살까지 잡히면서 더 많이 혼이 났다. 그리고 “이 새끼들. 내가 이러는 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거 몰라?”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 선생님에게 맞아가면서까지 고생하니 학생들 앞에서 학생회장의 권위가 서는 거 아니냐는 거였다. 그 때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이 ‘니가 참아라. 저 선생님이 요즘 안 좋은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위로해주었다는데 그 위로가 한 참 예민한 나이의 은주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 일로 은주는 여러 번, 죽고 싶다고 했다.

사례 9) 세 아이들 이야기

중학교 2학년인 세 아이가 어느 날 심각표정으로 부탁을 했다. 오늘이 학교 근처 야산에서 선배들한테 맞는 날인데 지나가는 사람인 척하고 자기들을 좀 구해달라는 게 그 요지였다. 자초지종을 캐물으니 지난 1년 동안 자기 학교 3학년들에게 계속 맞아왔고, 백 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빼앗다는 것이다. 선배들은 처음엔 좋은 언니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요구했고, 항상 때리고 난 뒤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맞는 게 무서웠는데 자꾸 맞으니 익숙해지더라고 했다. 한 번은 선배들한테 심

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어 자기들도 아는 1학년 동생을 불러다가 이야기 끝에 몇 대 때렸다고 했다. 또 선배들이 가져오라는 액수를 맞출 수가 없을 때는 그 동생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다. 게다가 옆 반 친구가 그 선배들한테 맞았던 걸 학교에 신고했다가 ‘행동 똑바로 안 했다’고 같이 엉덩이를 맞았다면서 학교에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학교에도, 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아이들은 일 년 반 동안 선배들의 폭력과 권위에 짓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길을 밟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오며

잠만 지는 학생인권법

2006년 3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소위 말하는 ‘학생인권법’이다. 이 법안에는 학칙 속의 생활규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사나 학교장의 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정규수업시간 이전 등교나 강제적 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 각종 차별 금지 등 청소년 운동 진영에서 오래도록 주장해온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

2004년 전교조 등의 0교시 폐지운동에 따라 교육부에서 0교시를 폐지하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많은 학교에서 이 지침을 어긴 점이나 강제자율학습·보충수업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편법으로 이를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부족하다’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크게 환영했다. ‘이런 법안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안이 된다.’, ‘통과되면 정말 살맛 나겠다.’는 식의 리플이 꼬리에 꼬리를 잇기도 했다. 그리하여 2006년 청소년운동진영의 가장 큰 숙제는 단연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였다.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본부가 꾸려졌고 전국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2006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는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 기자회견, 거리발언대가 줄을 이었다. 대구에서도 40여개 정당 단체가 참가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청소년 자유발언대’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문제를 둘러싼 대치 속에 국회 교육위는 오랫동안 개점휴업 상태였고 학생인권법은 수많은 법안들과 함께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2007년 7월 4일 부산의 배정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한문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오리걸음 체벌을 받던 도중 사망하였다. 그 외에도 강제야간 자율학습을 받던 고등학생의 사망,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이유로 투신한 여고생, 방학 중 학교에서 자살한 고교생 등 2007년 7월 한 달 동안 부산시내 중, 고등학교에서는 연일 사망, 사고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44개 교육퀀털막인권단체는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폭력의 교육을 중단하라’며 체벌과 경쟁적 입시교육의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에서는 워낙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건이 일어나 이슈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이들은 ‘입시’의 무게에 허덕이며 자기 삶의 끈을 놓을까 말까 하는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현장에는 여전히 학생인권은 죽어있고, 성적제일주의와 강제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은 오리걸음 체벌 도중 사망한 중학생 49제였다. 그 주에는 토요일 부산 서면에서 추모제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계속되는 학생 인권문제에 대한 전국적 공동 대응을 위해 ‘학생 인권을 위한 공동행동(가)’이 제안된 상태이다.

청소년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누가 뭐래도 청소년 운동의 주인은 청소년들이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권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그 어느 계층보다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 힘들다.

하지만 무한경쟁, 살인적 입시의 틈바구니에서 친구마저 경쟁상대가 된 지 오래인 조건에서도 하나 둘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도 그 유명한 ‘노컷 운동’의 외침이 전국을 뒤로부터 간간히 이어져오던 청소년의 움직임은 2005년 내신등급제가 시행 후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전국에서 내신등급제 반대하고 자살한 청소년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 집회가 열렸다. 언론에서는 연일 아이들이 큰 일이나 널 것처럼 떠들어댔고, 학교에서는 집회가 있을만한 곳에 학생주임을 내보냈다. 대구에서도 시위를 하기 위해 나온 청소년보다 경찰과 교사가 더 많아 집회를 할 공간을 만들지 못했던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부터는 ‘미학혁명(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거나 ‘개학반대 전국 1인 시위’ 등 본격적으로 학교를 향한 문제제기를 벌이고 있는 청소년 운동가들이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선불리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그들이 결코 녹록치 않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그 아이들의 날을 서게 만들고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따져 볼 일이다.

쪽방 · 노숙인 지원(의료 포함) 체계 현황

윤 승 결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 목 차 —

1. 대구지역 쪽방 · 노숙인 실태 및 현황
2. 쪽방 ·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현황
3. 쪽방 · 노숙인 사업의 과제

쪽방·노숙인 지원(의료포함)체계 현황

윤 승 결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1. 대구지역 쪽방·노숙인 실태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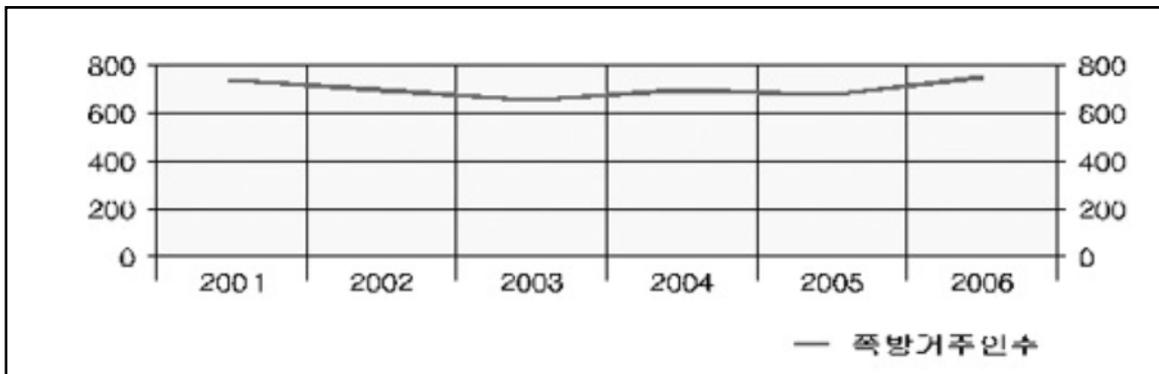
1) 쪽방의 특징

대구지역의 쪽방은 주로 여인숙 형태가 많으며, 여인숙이나 다름없는 오래된 여관, 그리고 북구 칠성동이나 고성동의 스테이지봉 형태의 달세방 등이 쪽방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쪽방거주인 현황표에서 알수 있듯이 대구지역의 쪽방은 30여개동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의 쪽방지역 역시 다른 대도시들과 비슷하게 역, 인력시장, 사창가, 버스정류장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이동성이 강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대구지역은 서울이나 대전과 같이 쪽방이 한 지역에 밀집지역을 형성하지 않고, 몇 개의 '구'와 여러개의 '동'에 많게는 6~9개, 적게는 2~3개 건물이 분산되어 산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주로 북구(칠성동, 대현동), 서구(비산동, 원대동), 동구(신암동, 신천동), 중구(대신동, 성내동)의 4개 구에 쪽방이 밀집되어 있다.

2) 쪽방거주인 현황

<표-1, 연도별 쪽방거주인 현황>



〈표-2, 쪽방거주인 실태〉

연도	쪽방거주인	비고
2001	735명	2001. 1 실태조사
2002	694명	전수조사
2003	654명	전수조사
2004	695명	각동담당자와 전수조사
2005	678명	전수조사
2006	748명	전수조사

(2007년 2월 기준)

· 구별인원

계	동구	서구	북구	중구	남·달서구
760	126(17)	270(35)	132(17)	211(28)	21(3)

· 성별

계	남	여	미파악
760	691(91)	67(9)	2

· 나이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760	7(1)	102(13)	261(34)	243(32)	112(15)	35(5)

· 주민등록상태

계	유효	말소	미파악
760	647(85)	65(9)	48(6)

· 수급여부

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비수급	미파악
760	358(47)	16(2)	327(43)	59(8)

▶ 2007년 설위문품 지원 시,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쪽방거주인 구별인원 분포는 서구지역의 270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구지역 211명, 북구, 동구 순으로 소규모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 여성 비율은 대략 9 : 1 정도로 대부분 독신 남성이다. 나이별로 쪽방거주인 분포를 살펴보면 40, 50대가 504명으로 전체 쪽방거주인 중 6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쪽방거주인 중 주민등록현황이 유효한 상태가 358명으로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말소 상태인 경우는 미파악을 감

안하면 10 ~ 15%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생계비를 지원받아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수는 374명으로 거의 50%에 가까워 졌음을 알 수 있다.

3) 쪽방상담소의 활동(2001 ~ 2007년)

30여개 동에 소규모 분산되어 있는 대구지역 쪽방의 특성으로 쪽방거주인들이 상담소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상담소 직원 각 구별 담당제로 주1회 이상 정기적인 재가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기본으로 긴급생계, 의료, 행정, 정서적 지원등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과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래 표-3, ‘연도별 사업현황’의 내용은 본 상담소에서 핵심적인 사업들만을 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3, 연도별 사업현황〉

항	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의료 지원 사업	현장방문진료		2002.6.26 ~ 2005.12						인의협 소속의사 3인, 영남대의대생 3인, 쪽방직원 3인으로 3인 1개조로 진료와 투약 상담병행
	상설무료진료			2003.3 ~	2004.5.24 ~ 현재				2003.3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상담소내 설치하여 의료지원사업 시작→ 2004. 5.24 적십자병원내 “쪽방·노숙인 무료진료소 개소
	거리무료진료		2002.6.26 ~ 2007.3						인의협 소속의사 3인, 영남대의대생 3인, 쪽방직원 3인으로 3인 1개조로 진료와 투약 상담병행
생계 지원 사업	긴급생계지원				2004 ~ 현재				1인 쌀10KG, 라면 1boX지원 등의 주·부식 지원
	밑반찬지원		2001.3 ~ 현재						초기에는 매주 화, 수요일 약 100여명의 쪽방거주인에 대한 1주일분 밑반찬 지원 → 현재에는 지역복지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에 중점
	거리무료급식		2002.4.26 ~ 현재						동대구 지하철 광장에서 매주 금요일 여러 후원단체들과 연계하여 저녁 무료급식을 진행
자활 지원 사업	공동작업장					2005.6 ~ 현재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화랑고무’ 지우개 상자과점기 진행(월평균수익15~20만원)	
상담 사업	재가방문						2005 ~ 현재		상담소 직원 4인으로 구별 담당제 실시, 매주 화, 수요일 PM6:00~10:00 현장방문상담 진행
	내방,현장,전화	2001 ~ 현재							수시로 상담 진행
	행정지원	2001 ~ 현재							주민등록재등록지원 기초생활보장신청 등

4) 노숙인 현황

노숙인을 거리노숙, 컴퓨터용노숙, 쪽방 등의 주거상실집단, 불안정 주거 집단으로 그 대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직도 정확한 거리노숙인원을 알 수 없으며 다만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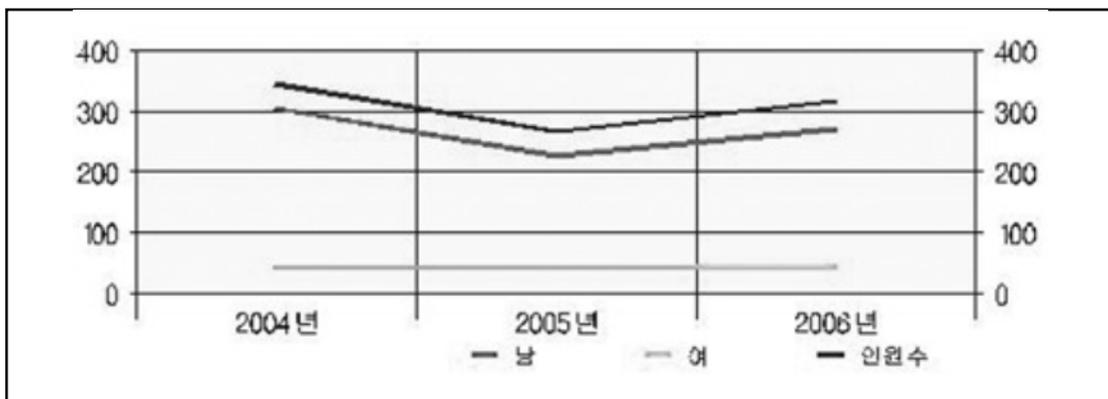
〈표-4, 대구지역 연도별 노숙인 현황〉

구분(2004년)	인원수	남	여
거리노숙인	175	162	13
컴퓨터용노숙인	170	142	28
총인원수	345	304	41

구분(2005년)	인원수	남	여
거리노숙인	112	104	8
컴퓨터용노숙인	155	122	33
총인원수	267	226	41

구분(2006년)	인원수	남	여
거리노숙인	116	148	13
컴퓨터용노숙인	155	122	33
총인원수	316	27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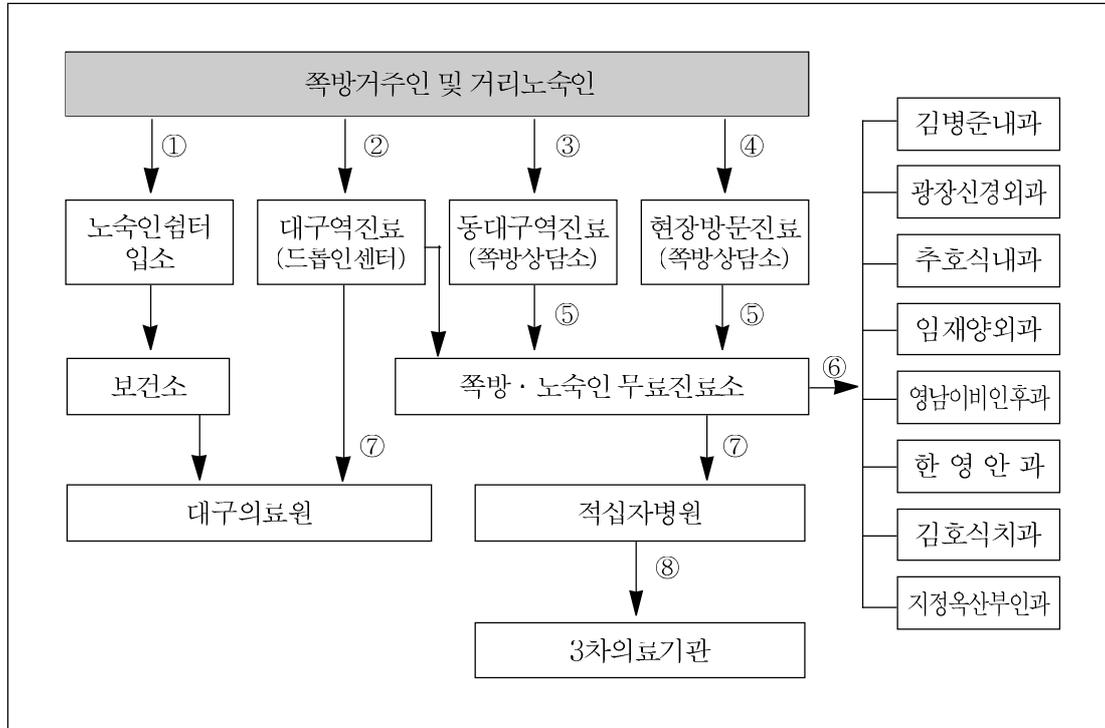
※2006년 대구지역 노숙인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서”(2006.11) 참조



▶ 전체 노숙인 수의 경우 2004년 7월 현황에서는 345명, 2005년 조사에서는 267명으로 2004년에 비해 약 23%(78명)이 감소, 2006년 조사에서는 317명으로 약 18%(50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쪽방·노숙인 의료지원체계 현황

1) 의료지원체계(2004년 5월)



대구쪽방상담소에서는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사무실 한 공간에 무료진료소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의 결실로 2004년 5월 쪽방·노숙인 무료진료소가 대구적십자병원 6층에 개소가 되어 대구지역사회에도 위의 표에서 보는거와 같이 그들을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쉼터에 입소 할 경우 보건소에서 1차진료 및 지정약국을 통한 투약처방 가능하며, 2차 진료 필요 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통해 2차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음(외래, 입원 가능)

② 쉼터노숙인 외의 거리노숙인은 드롭인센터에서 주 1회(매주 수요일 09:00~12:00, 공중보건의 파견) 실시하는 노숙인 진료와 월 1회(매월 첫째 금요일 19:00~22:00, “한뿌리” 단체 연계) 대구역 거리진료소 운영을 통해 1차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진료나 2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쪽방·노숙인 무료진료소를 이용하거나, 드롭인센터에서 발급하는 진료의뢰서를 통해 대구의료원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음(입원 불가능 →노숙인 쉼터에 의뢰하거나, 행려환자처리를 통해서 대구의료원 입원치료)

③ 동대구역 진료는 주 1회(매주 금요일 19:30~20:30, 공중보건외, 상근간호사, 대경인 의협 회원, 상담원, 자원봉사자 참가 등) 실시하며, 동대구역 및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리노숙인들과 쪽방거주인들이 주 이용대상으로 1차 진료, 투약처방 서비스를 받음

④ 현장방문진료는 주 1회(매주 화요일 19:00~22:00, 공중보건외, 간호사, 상담원, 자원봉사자 참가 등) 대구지역의 쪽방현장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진료 및 투약처방과 더불어 환자의 지속적인 질병관리, 신규 환자의 발견 및 응급후송 등의 활동

⑤ 동대구역 진료, 현장방문진료의 활동을 통해서 발견되는 환자들 중 장기치료환자 혹은 상위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상설무료진료소를 통해 지속적인 질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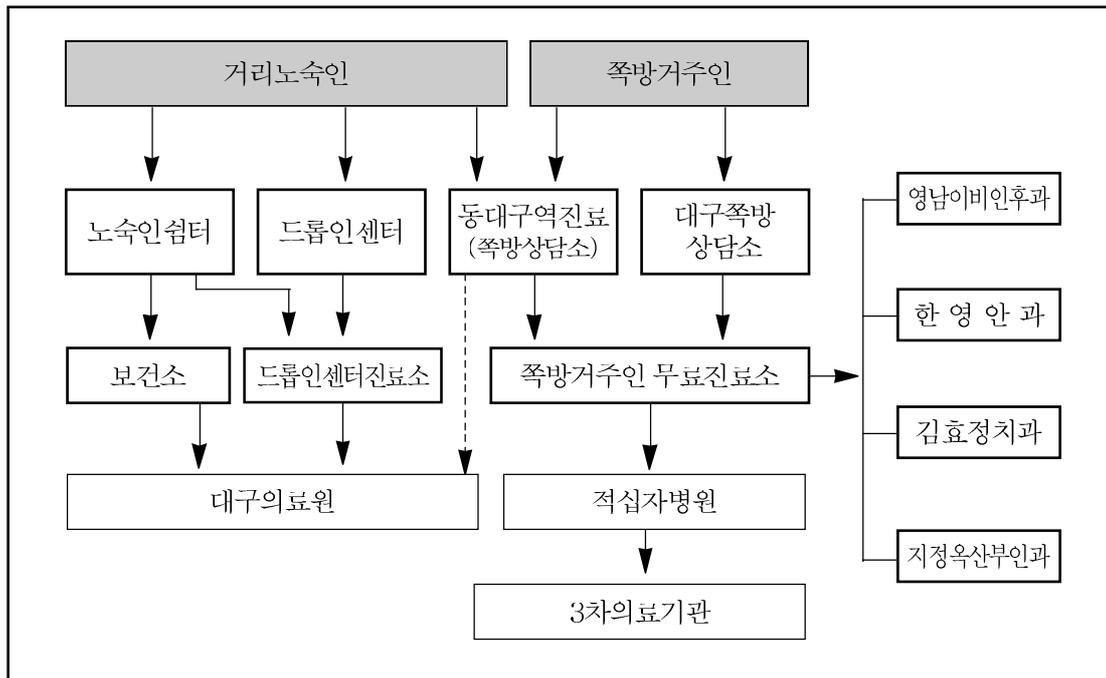
⑥ 진료소를 방문한 환자 중 적십자병원내에 해당과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의 의료자원과의 연계하여 지원

⑦ 정밀한 검사·진료·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십자병원이나 대구의료원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외래, 입원 가능) 그러나 쪽방거주자, 노숙인 중비보험자, 주민등록말소자 등과 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 어쩔수 없이 행려환자로 처리

⑧ ⑦의 진료과정을 거친 환자들 중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의 3차 의료기관으로 연계 실시, 이 중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수술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지원(사랑의 리퀘스트, 심장재단 등)

▶거리노숙인의 경우 ①, ②의 경로를 통해서 1차 진료 및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3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의료구호비의 예산한계로 인해 행려환자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음

2) 의료지원체계(2006년 5월 ~ 현재)



2004년 5월 쪽방상담소 진료소가 개소 할 당시 쪽방·노숙인 의료지원체계는 현재 그 지원체계와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대구쪽방상담소와 대경인의협에서 매주 수요일 19시 ~ 22시에 각 쪽방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던 현장방문진료가 2005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둘째, 드롭인 센터내에서 매주 수요일 9시 ~ 12시에 운영하던 대구역 진료가 드롭인센터 진료소가 개소되면서 2006년 5월에 중단이 되었다.

그리고 거리 진료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진료의 질'에 있어서 큰 한계를 보였던 동대구역 거리진료사업이 2007년 3월말에 종료가 될 예정이다.

3) Homeless 단체별 의료지원체계 현황

현재 거리노숙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 노숙인 쉼터 입소 후 보건소에서 1차 진료와 대구의료원에서 2차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드롭인센터진료소를 통해 1차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거나 센터에서 발급하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대구의료원에서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원은 불가능하여 입원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행려환자로 대구의료원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셋째, 그 외 지역사회 곳곳에서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2006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중구 지역외의 노숙인 단체 몇 곳은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쉼터 생활노숙이 보건소를 통한 1차 진료와 대구의료원을 통한 2차 진료

및 입원치료가 예전처럼 원활하지 못하였다.

<표-5, Homeless 단체별 의료지원체계 현황>

Homeless 단체	지역	의료지원현황		의료구호비 (천원)
		진료 및 외래진료	입원	
드롭인센터 (노숙인상담지원센터)	북구	드롭인센터진료소를 통 해 1차 진료 및 투약 처방 2차 외래진료는 대구의 료원에 의뢰	행려환자로 대구의료원 입원	예산×
제일교회 제일평화의집		1차 진료의 경우 보건소, 드롭인센터진료소, 자체 진료소 이용 2차 외래진료는 대구의 료원에 의뢰	- 의료구호비 예산에서 대구의료원 입원 - 민간자원 연계 입원 - 행려환자처리(예산×)	20,800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	달서구	1,2차 진료의 경우 대구의료원을 이용	- 의료구호비 예산에서 대구의료원 입원 - 행려환자처리(예산×)	24,000
선한사마리아인의집	중구	보건소를 통해 1차 진 료 및 2차 진료는 대구 의료원 의뢰	보건소를 통해 대구의료원 입원	20,800
구민교회 근로자의집		1차 진료의 경우 보건 소, 대구의료원, 적십자 병원을 이용	구청이나 희망원 입소를 통해 대구의료원 입원	20,800
가톨릭노숙인쉼터		보건소를 통해 1차 진 료 및 2차 진료는 대구 의료원 의뢰	보건소를 통해 대구의료원 입원	20,800

※ Homeless 각 단체별로 전화상으로 파악하여 일정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쪽방·노숙인 사업의 과제

○ 노숙인, 쪽방 거주자 지원체계(의료포함) 개선 방안

- 중앙, 지방정부의 노숙, 쪽방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개선
 - 시설통합론, 시설중심적사고 반대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원 개선
 - 자활사업(일자리제공): 겨울철 자활근로사업의 정례화가 필요함.
 - 주거권 확보시급 함(적극적주거정책)
 - 신용불량문제의 적극적지원이 필요:돈이 없어서 파산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상설진료소의 진료수준을 높이고, 노숙인·쪽방거주자들의 자발적 방문 유도
- * 현 상설진료소의 경우 공간이 지극히 협소

- * 병원측으로부터 지원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 약품 및 진료장비 지원 체계: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
- 쪽방·노숙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 알콜중독에 대한 대책
 - * 정신과 상담
 -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 개발
 - * 웃음치료등의 사회복지 전문프로그램 개발
 -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병행
- 예: 서울 성공회대학의 노숙인 대상 인문학 강좌
- * 전염병 관리체계 및 정기건강검진

부동산으로 일그러진 한국사회 이제, 주거'권'을 얘기하자

서 창 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목 차 -

1. 주거권, 박제화된 상식과 유리된 현실
2. 한국사회를 둘러싼 주거권에 대한 이해
3. 주거권의 의미
4. 집은 어떤 공간인가
5. 건설자본과 투기에 저당 잡힌 인권
6. A가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B가 주거비 부담이 높아 간다는 냉정한 현실
7. 주거운동의 투쟁 양상과 한계를 넘어
8.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9. 주거 공공성의 원리
10. 주거권의 의미는 확장되어야 한다
11. 주거는 삶에 근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자

부동산으로 일그러진 한국사회, 이제 주거 '권' 을 제기하자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 한국사회의 간략한 주택현황 》

- 현재, 한국의 총 주택수는 1천 322만 2천 641호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한국의 보통가구수인 1천 249만 507가구와 비교하면 한 가구 당 한 채씩 집을 갖고도 73만 2천호의 주택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집이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국민의 주거가 안정되기는커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건설업자 마음대로 정하는 고무줄 분양가 그리고 계속되는 전·월세 대란과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상실은 국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 전체가구의 41.4%에 이르는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판잣집·옥탑·비닐하우스·동굴·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주거 극빈층도 68만 가구, 160 만 명에 이르고 있다.

- 이와는 반대로 104만 6천 857가구가 자기 집에 살면서도 타 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가구이며, 5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5만 3천 가구가 넘는 등 다주택 보유가구 당 평균 4.6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집 부자는 1,083채라는 상상하기 힘든 주택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주택 보유는 주택이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 한 채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주거권, 박제화된 상식과 유리된 현실

‘주택은 주거의 수단이다’는 말은 누구나 수긍하는 보편적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주거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평당 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둔갑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상에 방 한 칸 몸 누일 공간이 없어 거리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하고, 인권침해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시설과 컴퓨터에 들어 가야 비로소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거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거권’ 혹은 ‘주거의 권리’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주거생활이 의, 식과 마찬가지로 핵심으로 꼽히듯이 다른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

이다. '주거권'을 '정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집은 '삶의 자리'이며 생명과 가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그러므로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주거의 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中

1. 강제퇴거(철거)는 인권(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선언한다.
2. 정부는 강제퇴거(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정부는 현재 강제퇴거(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람(주민)들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4.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 거처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 1993년 3월 10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2. 한국사회를 둘러싼 주거권에 대한 이해

그러나 우리 사회는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각종 국제문서와 헌법 등은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권은 법률적, 제도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규범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주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개악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정권이나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처럼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주거권이 여겨지지 않음으로써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 역시 인권침해로 여겨지지 않는다. 매일같이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누군가 경찰에게 맞는 광경을 볼 때와 같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 그저 안타까운 일일 뿐이다. 부당한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집이 없다고 혹은 부적절하다고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다.

몇 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대책도, 주거빈곤층의 주거복지정책도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하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던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주거안정의 문제는 다른 여타의 사회적 과제보다 뒷전이었고,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적다.

심지어 운동사회조차도 ‘주거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인용되는 데에 그쳤다. 그래서 운동사회에서 술하게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우리는 주거권을 너무 모른다. 도대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3. 주거권의 의의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에게 주거권이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거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지 않는다.

우리가 주거권이라는 말을 더욱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먼저, 주거가 권리라는 말은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주체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집을 구하는 문제는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적절한 주거를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이 공동체, 혹은 당사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인권 담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저항의식에 있다. 저항은 나와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질서를 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선후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운동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권리의식은 반드시 요청된다.

4. 집은 어떤 공간인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는 광고문구는 알밋지만 진실이다. 공간, 즉 어디에 위치해있는가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함축한다. 우리에게 집은 어떤 공간인가.

집의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간의 생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몸을 씻고 배설물을 처리한다. 생물로서의 인간 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에 따라 집은 일정한 수준의 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간이다. 혼자서 살든, 특정한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든 집은 삶을 일구어가는 터전이 된다. 마음을 다스리거나 휴식을 취하고 미래를 설계하거나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하는 등의 행위들은 사회와는 다른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은 사회적 관계나 질서와 연결되어 있지만 적어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테두리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이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또한 주거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집의 안팎만을 경계짓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집은 사회자원과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점이 되는 공간이다. 학교와 세탁소와 공원과 지하철역 등 공적으로 이용되는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지만 어떤 집에 살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 된다. 또한 집이 사적이고 고립된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공적이고 개방된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임이 분명해진다.

넷째, 집은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공간이다. 공법 관계에서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투표권이 부여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의 주체로 여겨지는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것이 그렇다. 국가권력과 개인이 관계를 맺게 되는 근거지인 것이다.

[대구시 가구의 주택의 종류별 점유형태(2005, 일반가구 기준, 단위 : 가구)]

	계	자가	전					무상
			계	전세	월 보증금 있는 월세	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전체 가구수	814,585 (100%)	439,214 (53.9%)	354,267 (43.4%)	171,820	111,646	27,984	42,817	21,104 (2.6%)
단독주택	389,744	134,591	243,888	113,695	65,955	24,710	39,528	11,265
아파트	356,812	258,251	92,563	48,463	41,378	918	1,804	5,998
연립주택	7,287	5,632	1,278	970	174	54	80	377
다세대 주택	43,365	34,916	7,657	5,773	1,314	216	354	782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5,166	5,557	6,628	2,709	2,467	1,452	895	2,086
주택이외의 거처	2,221	267	1,358	210	358	634	156	596

이처럼 집은 다양한 의미가 작용하는 공간이다. 주거권에 대한 이해는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며 각각의 층위마다 작용하는 대답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주거권은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현실과 결핍을 인식하는 거울이면서 현실의 결핍을 제거하기 위한 지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의 모순을 투명하게 밝히는 작업은 필수적일 것이며 그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넘어 생산과 공급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5. 건설자본과 투기에 저당 잡힌 인권

인권은 보편성과 차별없음을 내포한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는 특정한 개인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질서를 지탱한다는 점에 인권침해의 본질이 있다. 주거권도 마찬가지다.

주거권은 누구나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이 말은 개인이 적절한 주거를 누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내 후손이, 우리 모두가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 즉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질서에 대한 권리다. 누구도 적절한 주거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질서에 대한 권리. 주거권은 사회경제적 체제의 문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질서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를 통해 그것을 ‘소유’ 해야 한다.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이용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땅은 누구나 알듯이 한정되어 있다. 새로운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할 지언정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처럼 제한된 땅에 대한 배타적 소유는 소유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문제삼는 부동산 투기는 단지 불로소득을 챙기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의 무기가 되는 소유를 통해 다른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런 점에서 투기와 투자, 투자와 내 집 마련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또한 한정된 토지를 장악해가면서 거주를 위한 공간을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본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지어지는 대부분의 주택은 아파트다. 또한 민간부문에 의해 지어지는 주택이 많다. 현실에서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아파트에 있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이다. 아파트 가격을 따라 땅값이 오르고 해당 지역의 집값이 함께 오르는 것이다.

아파트 시장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일뿐더러 자본주의적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원리조차 작동하지 않는다. 아파트 시장에 상품을 내어놓는 개별행위자들은 수많은 건설업체다. 이들이 집단적 행위자로서의 건설자본을 구성한다. 건설자본이 주택을 공급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윤의 추구, 결국 팔릴 만한 집, 돈이 될만한 집을 만드는 것이

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도 2006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소, 주택재개발사업 104개소, 주택재건축사업 121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6개소, 지정유보구역 1개소 등 총 273개소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대구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현황]

구분	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 개발사업	주택재 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정유보
계	273	11	104	121	36	1
중구	65	1	25	7	31	-
동구	38	-	8	29	1	-
서구	24	-	11	13	-	-
남구	45	-	27	15	3	-
북구	30	10	7	13	-	-
수성구	43	-	14	28	-	1
달서구	25	-	12	13	-	-
달성군	3	-	-	3	-	-

그러나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법령의 불명확성, 절차 미비 등으로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 정비예정 구역의 지정이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개별적인 건축으로 인해 도시계획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지역의 가옥주와 세입자, 점유권자의 주거불안과 함께 생존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개발이다. 이 규모가 최소치로 구역별 전체 500세대(1세대 3인기준)로 했을 때 273구역일 경우 최소 41만명, 최고치로 전체 1000세대(1세대 3인기준)로 했을 때 273구역일 경우 82만명의 주거불안과 생존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설자본이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돈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는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건설회사가 무이자로 소비자의 돈을 사용하는 제도다.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개발지역일수록 엄청난 돈이 몰려든다. 또한 국민주택 기금의 대출이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본에게 대출되는 금액은 수요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두 배 가량 된다. 집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준다. 이렇게 지어진 집에서 나오는 이득이 건설자본에 쌓이는 것이 바로 '경기부양'의 실체다. 또한 건설자본의 투기에 정부가

거드는 형국이 되고 있다.

6. A가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B가 주거비 부담이 높아간다는 냉정한 현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지어올릴 땅이 없거나 집을 짓는 데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누군가 만들어놓은 집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렇다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투기나 투자를 위해 집을 사는 사람들, 즉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이다.

[대구시 주택보급율 · 미분양 현황]

인 구 수	가 구 수(세대)	주 택 수	보 급 률	비 고
2,525,836	826,113	720,493	87.21%	

구분	총계	민 간 부 분				공 공 부 분			
		소계	60㎡ 이하	60㎡초과 85㎡이하	85㎡ 초과	소계	60㎡ 이하	60㎡초과 85㎡이하	85㎡ 초과
'07. 2월말	9,347	9,347	104	3,561	5,682				
'07. 3월말	9,189	9,189	100	3,458	5,631				
전월대비	△158	△158	△4	△103	△51				

주택 시장에서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윤의 극대화는 모든 지점에서 주거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집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의 심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일지라도 결국 시장에서는 특정 행위자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현실을 직시하지는 것이다. 누군가의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환상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동안 현실에서는 주거비 부담이라는 어둠이 우리의 삶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시장으로 작동하는 동안 집값을 부담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를 위한 집은 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7. 주거운동의 투쟁 양상과 한계를 넘어

최근의 주택·부동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적절하고 안정된 주거를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지, 그것의 침해와 실현은 무엇일지에 대한 폭넓은 동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주거권과 관련한 투쟁양상은 △ 주거빈곤가구(노숙, 쪽방, 지하, 비닐하우스, 영구임대아파트 등)의 주거환경 개선 △ 주택·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정책 및 투기제한 대책 △ 각종 개발정책과 강제퇴거에 대한 대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권과 관련한 쟁점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수없이 많다. 빈곤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주거권에 접근하거나 도시계획과 같이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서 주거권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접근들이 분절적인 정책요구로만 존재하는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 다양한 투쟁들을 통해 쌓이는 성과들이 주거권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운동의 맥락에서 배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관통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투쟁들이 서로를 가로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 여성운동, 소수자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운동과의 연대를 기획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한다.

8.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주거가 권리로 여겨지지 못하는 현실의 한가운데 ‘주택=상품’이라는 등식이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돈에 대한 탐욕에 복무할 뿐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집을 평등하게 점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주거권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시장이 아닌 다른 질서를 고민하고 요구해야 한다.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집이 만들어지고 나누어지고 점유되는 질서.

주거가 개인적 문제로 한정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봤다. 이를 위해 공공이 공간에 개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질서를 미약하게나마 경험해왔다. 초중등 무상교육이나 건강보험제도, 물과 전기 등 필수서비스의 공적 이용과 같은 것들이 공공성의 실마리가 된다. 현실은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급받아야 하며 우리는 정도에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진다. 교육과 건강, 물과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집도 마찬가지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적절한 주거는 필수적이나 시장을 통한 주거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또한 ‘집’을 거점으로 삶이 뻗어나가는 공간은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모색이 시작되어야 한다.

9. 주거공공성의 원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주택의 분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안정된 점유를 누리는 것 모두가 공공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도 적절한 주

거에서 배제되지 않는 질서가 가능해진다.

주거권과 주거공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요청된다.

첫째, 집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점유하는 과정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를 반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차적으로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의무³⁾는 당사국 정부가 져야 한다. 공공의 개입은 현실적으로 국가개입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때 국가의 개입은 자본의 질서를 옹호하는 현재의 국가권력이 아닌 민중적 통제에 기반한 실질적인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취약집단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적절한 수준, 즉 인간다운 삶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주거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리적 성질과 필수서비스의 공급, 기반시설의 확보, 비용부담 등 모든 것이 인간다운 삶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이 실질적으로 주거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도주거기준 등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수준은 더욱 큰 것, 더욱 새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시각을 견지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등과 상관없이 필요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접근의 제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때문에 발생하는 접근의 제한 등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접근성의 확보는 장애인들이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설계와 건축이 장려되어야 하고 비용으로 인한 벽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또한 가구 중심으로 주거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부당하게 수준이 낮은, 부당하게 수준이 높은 주거를 누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주거를 누리는 데에 서로 다른 집단이나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른 필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시장에서의 생산과 분배는 이윤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공에 의한 생산과 분배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좀더 넓은 집이 필요할 테고 휠체어장애인이 있으면 턱이 없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집이 필요하다.

3)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다. 택지개발을 위한 강제퇴거나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강제수용 등은 존중의 의무를 어기는 행위다. 둘째, 보호의 의무는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다. 투기꾼들이나 건설자본 등에 의해 치솟는 집값이 주거권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 국가는 적절한 통제와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실현의 의무는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할 의무다.

10. 주거권의 의미는 확장되어야 한다.

주거권 침해를 밝히는 것은 주거권 침해 당사자로서의 새로운 대안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그 주체들의 집단적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동안 홈리스, 즉 ‘집없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주거공간을 갖추지 못한 사람,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의미의 ‘집’을 염두에 둔다면 집없는 사람들은 훨씬 다양하고 많아진다. 국가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인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소개되어 있는 ‘홈리스의 조작적 정의’만 보더라도 시야는 훨씬 넓어진다.

▶ 노숙상태(rooflessness)

- 공공의 장소에서 거주
- 야간긴급 쉼터에 체재

▶ 집이 없는 상태(homelessness)

- 지원서비스 시설 혹은 피난소
 - 홈리스를 위한 숙소
 - 여성을 위한 쉼터
- 일시적인 숙소에서 거주
 - 임시적 숙소
 - 통과거주시설
 - 이민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 시설거주
 - 감옥, 개호센터, 병원
- 사회적 지원형 숙소

▶ 불안정/부적절한 주거

- 빈 건물에서의 스쿼팅
- 저렴한 호텔에서 거주

▶ 불안정한 주거(insecure housing)

- 강제퇴거에 임박해 있는 거주
- (자의적인 선택에 의하지 않은) 가족 혹은 벗과의 일시적 동거
- (파트너와 가족으로부터의) 폭력의 위협 하에서의 거주

○규범적인 법적 임차권을 갖지 않은 주거에서의 거주

▶ **부적절한 주거(inadequate housing)**

- 임시적인 구조 혹은 조야한 오두막에서 거주
- 이동주거(캐러밴)에서의 거주
- (국가의) 법적기준 이하의 거주에 부적합한 주거
-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심각한 과밀상태에서의 거주

11. 주거는 삶에 근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자

집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강제퇴거 상황에서는 더욱 분명해진다. 누가 얼마나 오래동안 살았는지, 그/녀가 점유하고 공유했던 공간에 기여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나 소유냐를 기준으로 권리가 인정되거나 박탈된다.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강제퇴거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상 문제, 지역의 개발을 결정할 권리를 지역에 거주하는 모두에게로 확장하는 것, 퇴거를 요구하는 소유주의 사유를 제한하는 것 등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소유권 절대 원칙은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한다. 토지공개념의 도입이나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은 공간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가능성의 계기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국가에 의한 배분에 그치고 있어 '사용할 권리'의 근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말하지 못한다.

하기에 2007년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일그러진 현실에서 주거권은 새롭게 확장되고 더욱 진전되어야 하지만 여전히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거권을 운동에서 권리라는 보편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치적 실천적 기획이 더욱 필요한 즈음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 발 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목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 II.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방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 I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 II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주요 내용

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I. 인권NAP의 주요내용
- II. 정부 인권NAP에 대한 검토
- III.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의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인권정책의 청사진(master plan)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임
-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필요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인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정책)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함
 - 2001. 5. 2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세계적 추세로 1993년 호주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2005년 5월 현재 20여 국가가 이를 완료했으며 해마다 수립국이 증가하고 있음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목표와 주요과제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 인권 취약계층의 객관적 실태조사 강화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 증진방안 마련

○ 인권 옹호·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

-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활동 강화
- 국가의 다른 종합계획과 연계망 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

- 정규/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
-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 인권교육·홍보 강화

○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대효과

-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국내외에 천명
- 인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 포괄적 인권정책 수립을 통한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
-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의식과 생활의 정착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기능 강화

II.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방법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원칙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립해야 함

-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 수립
-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 기준 준수
- 인권침해의 구체적 현실과 인권 피해자의 당면 문제 고려
-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 고려
- 시민사회의 참여 및 대중성 확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절차 준수
-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정책과제의 영역별 특수성 고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

○ 권고기관

대부분 국가는 권고기관 없이 바로 수립기관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수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통보하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함

○ 협력기관

각 정부기관, 인권단체 및 전문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과정이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협의함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정

구분	준비 단계	개발 단계	이행 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관 협의를 통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주체 확정 ○NGO/관련단체와 협의 ○기본원칙개발 ○권고안 작성의 법률적 근거 마련 ○대외 공표 ○관련 단체와 초기 회의 조직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설립 ○기초현황 조사 및 연구 ○연구결과에 따른 인권 문제 분석 ○관련 기관/단체와 수시 간담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정부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 확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 설립* ○NGO/관련단체와 협의 ○공청회/ 청문회 ○우선순위/특별중점사안/취약계층 요구 사항 등 파악 ○국가의 다른 정책 계획과 연계수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실행 일정 구상 ○이행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부처의 세부계획작성 ○집행기관간 공조 유지 ○집행기관의 정책 실행 ○협의 및 연계망 구축 ○언론홍보 전략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된 보고형식 개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평가 ○시민사회 의견 수렴 ○협의 및 연계망 구축 ○국회 또는 대통령에 모니터링 결과 특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례보고서 구상 ○심의협의회 구성 ○국회 또는 대통령에 특별보고 ○차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 준비 ○차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새로운 분야 기초 조사
주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정 부	정 부	국가인권위원회	
자문기관	정부/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정부/시민단체	

* 위의 표는 유엔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핸드북에서 제시한 단계별 추진과정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임

* 개발 및 이행단계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는 정부가 구성·운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참석하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준비단계, 모니터링단계,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협의회를 주관함

▶ 준비단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는 기관과 주요 국가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이 모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위한 제도적인 구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초기 단계
- 정부기관의 협의로 권고안의 작성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확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원칙과 수립계획을 대외에 공표
- 주요 부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기초현황 조사 연구
- 연구결과에 따른 인권문제 분석
-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정책협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통보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자료수집과 인권 기초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관련조직 운영, 영역별 핵심과제 선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등의 준비 단계 진행

▶개발단계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대통령)에 통보하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조정실이나 주관부처 등이 주도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부의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단계
- 공청회와 청문회 실시 및 NGO 등 관련단체와 협의
-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특별중점사안 선정, 사회적 약자·소수자 요구사항 등 파악
- 정부 부처별 정책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 확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실행 일정 구상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개발하는 각 정부기관에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자문 기능 수행

▶ 이행단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이 실행의지 및 물적·인적기반을 구체화 한 세부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단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실행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의 정례회의 개최
- 관련 집행기관 간 공조 유지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언론홍보 전략
- 관련 인권교육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실행과정에서 자문 역할 수행

▶ 모니터링 단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를 수정하고 활동을 조정하는 단계
- 합의된 보고 형식 개발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의한 정기적 평가
- 시민사회 의견 수렴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국회 및 대통령에 모니터링 결과 특별보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 평가단계

-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과 효과 등을 평가하고,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단계
- 별도의 심의협의회 구성
- 국회 또는 대통령에 평가결과 특별보고

-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새로운 분야 기초조사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적합성과 실행가능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과제의 시급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실행을 위한 부처간 업무 관할권과 업무 중복성 관련 문제 해결 능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의 참여보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의의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인권 관련 정책·연구, 조사·구제, 교육·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인권개선 청사진 제시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근거

-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기관으로 조정됨(2003.10)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 19조 내지 제21조)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자료 수집
 -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전반적인 인권문제 파악 및 대안 발굴
 -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분석

- 정부 부처별 중장기 기본계획, 정책계획 분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자료 번역 발간
 - 유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15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3개국의 6대 인권 협약 보고서에 대한 유엔권고 등 번역 발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 실시
 - 자유권 8건, 사회권 10건, 사회적 소수자 7건, 인권교육 1건 등 총 26건

4. 인권단체 의견수렴

-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한 인권단체의 의견 반영
- 영역별 쟁점 보완, 정책과제 추진방향 점검, 정책과제 우선순위 선정과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주요 인권단체에 서면으로 의견수렴(2004.7)
- 영역별·권리별 총 17회 간담회 개최(2005.3)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초안에 대한 인권단체의 서면 검토 및 간담회 개최 (2005.8~11)

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영역별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해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
- 특히 노동, 사회복지 분야 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함

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NAP추진기획단
 -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단장1인, 간사1인),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8인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 운영
 - 역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및 작성추진의 기본방향 논의
- 전문가자문팀

- 구성: 20여 개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 운영
- 역할: 해당분야 연구용역 및 자문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인권정책국장,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 운영
 - 역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과정에서 내용 협의
- NAP실무팀
 - 구성 : 인권정책국장 외 8인으로 구성 운영
 - 역할 : 자료수집과 주요과제 정리
인권단체와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 여론 수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초안 작성

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경과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전담부서 지정(2002.4)
-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설명(2003.1)
- 국회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특별보고(2003.4)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확정됨 (2003.10)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2003.12~2005.4)
- NAP실무팀 구성 및 운영(2004.1~2005.12)
- NAP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2004.2~2005.5)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근거규정 마련(2004.3)
- 인권단체 의견수렴(2004.6~2005.10)
- 정부기관과 정책협의(2005.6~12)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특별위원회 운영(2005.8~2006.1)
- 인권위원 워크숍(2005.9~12)
- 전원위원회 심의(2006.11~12)
- 전원위원회 의결(2006.1)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정부에 통보(2006.2)

I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배경

-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흡함
- 특히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은 심각한 상황이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되고 있음
-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간극이 존재하고, 정보인권, 환경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도 일정한 인권기준과 질적 향상이 요구됨
- 따라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은 한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의의

○ 전체구성 의의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 제2부(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 의의

- 향후 5년간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 당사자 스스로 의제 설정이 어려운 분야
-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로 하는 분야
-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 인권교육 강화 분야
-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Ⅲ.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주요 내용

1. 제1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개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개요 및 추진방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추진과정 및 구성

2. 제2부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 구성기준

-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 대상영역

-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兵)/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 총11개 대상영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법 정비, 참정권 확대, 이동권 보장과 교육권 보장,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 제시
- 비정규직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남용방지, 차별시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확대 등 제시
-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본적 권리 보호, 본인 및 가족의 권리 보호, 이주 여성의 권리증진 등 제시
-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및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성전환 관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 제시
- 새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새터민 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등 제시

3. 제3부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기준

-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
- 인권교육 분야 및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주요 내용

-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제한 및 오남용 방지
-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최소화
-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완화
-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제시
- 정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 작업장 감시기술 도입 운영 정보 공개 등 제시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부문·공직종사자·시민사회의 인권교육 강화 제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은 추상적 수준에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거나 많은 정책적 과제를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I. 인권NAP의 주요내용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1부 서론,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으로 구성

2. 제2부 내지 제5부의 형식

- 국내적 기준, 국제적 기준, 국내 현황,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쟁점을 수록
- 쟁점이 된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쟁점 사항

가. 사형제도 개선 (생명권)

- 현행법 상 사형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07년 중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 검토 및 절대적 중신형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심사에 반영

나.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

다.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검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2007년 상반기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

라.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 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합리적 운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 개선 노력,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경찰조치의 공정성 제고, 이익충돌 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집회·시위를 관리

바.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마련·시행 (근로의 권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등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

사. 북한인권 관련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대북한 인도적 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 활동 지원과 함께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포함

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외에 추가된 과제

가.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관련

- 자살예방사업의 강화,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 과학적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지능력 제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또는 명예 보호 강화, 지방인재에 대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등

나.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관련

-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 지원, 식품 안전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다.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관련

-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시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등

라.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관련

-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검토, 강제실종협약 서명 추진 등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발표 시점부터 2011년까지 정부 각 관계부처가 상호 협조하여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
- 정부 각 관계부처는 매년말 정기적으로 이행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를 공개할 예정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1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그 이행에 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II. 정부 인권NAP에 대한 검토

1. 정부(법무부) 인권NAP 초안 개요

가. 초안 관련 공청회 개최

- 2007. 2. 정부(법무부)는 인권NAP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나. 초안 구성

- 법무부 인권 NAP 초안은 6개의 부로 구성
- 제1부 NAP의 개요, 제2부 자유권의 보호와 증진, 제3부 사회권의 보호와 증진,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제5부 인권교육 및 협력, 제6부 향후 NAP의 운영으로 구성

다. 주요 특징

-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계획 수립
- 미래지향적 인권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제시 부족

- 보편적 인권 기준 반영 미흡
- 다양한 의견수렴 부족

※ 인권NAP 수립·이행 과정은 정부 주도로 진행할 예정 (법무부 인권국 입장)

2. 정부(법무부) 인권NAP 초안에 대한 검토

가. 전체적 검토

(1) 핵심과제 누락여부

(가) 누락된 과제

- ‘사회적 약자·소수자’ 영역의 보육·교육 혜택 확대, B형 간염보균자, 환자의 인권보장,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영역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영역의 주거권 등

(나) 추가된 과제

- 재외동포,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경제에 관한 권리, 가족에 관한 권리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음

(2) 수용여부

-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인권NAP 권고안은 260개의 과제 중 148개 (57%) 과제가 수용되었고, 56개(22%) 과제가 수용되지 않음

【표 1 : 법무부 인권NAP초안의 수용 현황】

구 분	인권위 권고안	정부(법무부) 초안			비 고
	과제수	수 용	일부수용	미수용	
합계(백분율)	260 (100%)	148 (57%)	56 (21.5%)	56 (21.5%)	

(3) 영역별 수용 현황

-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39개 과제에 대하여 권고하였고, 정부(법무부)는 93개(67%) 과제에 대하여 수용하였으며, 23개(16%) 과제를 수용하지 않음
-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는 권고안은 38개 과제를 제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16개(42%) 과제를 수용하였고, 12개(32%) 과제를 수용하지 않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는 55개 과제에 대하여 권고하였고, 정부(법무부)는 23개(42%) 과제에 대하여 수용하였고, 14개(25%) 과제를 수용하지 않음
- 또한 ‘인권교육’ 분야와 ‘국내외 인권협력체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3개, 15개 과제를 각각 권고하였고, 정부(법무부)는 10개(77%), 6개(40%) 과제를 각각 수용함

【표 2: 정부(법무부) 인권NAP초안의 세부 수용 현황】

인권위 권고안		정부(법무부) 초안			비고
분야	과제수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사회적약자	139 (100%)	93 (67%)	23(16.5%)	23(16.5%)	
자유권영역	38 (100%)	16 (42%)	10 (26%)	12 (32%)	
사회권영역	55 (100%)	23 (42%)	18 (33%)	14 (25%)	
인권교육강화	13 (100%)	10 (77%)	2 (15%)	1 (8%)	
협력체계구축	15 (100%)	6 (40%)	3 (20%)	6 (40%)	
합계(백분율)	260 (100%)	148 (57%)	56 (21.5%)	56 (21.5%)	

(4) 전체적인 평가

(가)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계획 수립

- 정부(법무부)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처음으로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인 인권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형상 우리 위원회 인권NAP 권고안의 주요 분류체계에 따라 대응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음

(나) 미래지향적인 원칙과 방향의 부재

- 인권NAP의 기본 성격이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권NAP 초안은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기초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인권NAP 초안에는 종합적 차원에서 향후 5년간의 환경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인권개선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기 보다는 현재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가 주로 포함되었음
- 법무부 초안은 향후 5년간의 계획으로서 전반적 방향성이 부족하고, 구체적 일정이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실행계획으로서 미흡

(다) 보편적 인권 기준 반영 미흡

- 정부의 인권NAP 초안은 정부로 하여금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여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수립하라고 제시하였고, 국제인권기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받았던 내용 조차도 소극적이거나 누락됨

- 또한 우리 위원회가 이미 개별적으로 권고하였고, 인권NAP권고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주요한 쟁점에 대하여 여전히 답보 상태
- 우리 위원회 권고안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으나, 법무부 초안은 상대적으로 이를 약하게 취급

(라) 수립과정상 의견수렴 부족

- 우리 위원회는 인권NAP권고안에서 인권NAP를 수립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절차를 준수하고 정부부처, 인권기구, 시민사회 등이 인권NAP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따라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인권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특별중점사안 선정, 사회적 약자·소수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야 함
- 그런데 정부(법무부)는 현재까지 인권NAP안에 대한 실질적인 공청회를 단 1회 개최하였으나 형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음
- 또한 정부의 인권NAP 추진과정은 관련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위원회의 (자문)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음
- 정부 부처 중심의 폐쇄적인 인권NAP 수립은 향후 인권NAP 이행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모니터링·평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임

나. 세부 평가

(1) 사회적 약자·소수자 영역

(가) 수용현황

- 사회적 약자·소수자 영역에서 우리 위원회의 인권NAP 권고안과 대비해 보면, 보육·교육 혜택 확대, B형 간염보균자, 환자의 인권보장,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분야의 과제 항목이 누락되었음
-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으로 구분하여 권고안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정부(법무부) 인권NAP 초안은 우리 위원회 권고안과 수용정도를 대비해 보았을 때 노인(89%), 병력자(84%), 장애인(80%), 여성(7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은 수용율이 매우 좋지 않았음

【표 3 : 사회적 약자·소수자 영역의 수용 여부】

인권위 권고안		정부(법무부) 초안			비 고
세부영역	과제수	수 용	일부수용	미수용	
사회보장권	9	1 (11%)	6 (67%)	2 (22%)	
노동권	14	7 (50%)	6 (43%)	1 (7%)	
건강권	4	1 (25%)	-	3 (75%)	
주거권	5	1 (20%)	-	4 (80%)	
교육권	9	6 (67%)	2 (22%)	1 (11%)	
문화권	7	2 (28.5%)	2 (28.5%)	3 (43%)	
환경권	7	5 (71%)	2 (29%)	-	
소 계	55(100%)	23 (42%)	18 (33%)	14 (25%)	

(내) 미수용 내용

1) 장애인

- 장애인 영역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인권NAP 권고안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누락되었고, 정신장애인 수사과정상 변호사 등에게 조력받을 권리 보장 등 일부 과제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음(표4 참조)

2)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핵심적인 “비정규직 고용허용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 원칙이 관련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미흡함
- 특히 민간부문 고용차별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3) 이주노동자·난민

-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에 기초하였으나, 공무원통보의무제도,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 제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계획이 누락되었음
- 난민 부문은 우리 위원회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후 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될 것임

4) 여성

- 여성 부문에서는 대부분 우리 위원회 권고안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부문에서는 빈곤아동의 보건의료제도 개선이 미흡하고, 입시경쟁 완화 교육정책 수립이 되지 않았음

6) 노인/병력자/새터민

- 노인, 병력자, 새터민 부문에서는 대부분 수용하였음

7) 군인/전의경

- 정부(법무부) 인권NAP 초안에는 군인/전의경에 대한 별도의 항목 자체가 없었으나, 현재 국방부와 경찰청의 개별적인 업무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행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8) 시설생활인

- 시설생활인 부문에서는 우리 위원회 권고안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법무부) 초안에는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장 종합대책은 없음

9) 성적소수자

- 성적소수자 영역에서는 교육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용되지 않았음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가) 수용현황

-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영역에서 우리 위원회의 인권NAP 권고안과 대비해 보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분야의 과제 항목이 누락되었음
-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영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형사 사법절차상 인권보호, 참정권 등 권리별로 구분하여 권고안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정부(법무부) 인권NAP 초안은 우리 위원회 권고안과 수용정도를 대비해 보았을 때 정보인권(75%), 참정권(67%), 언론·출판의 자유(5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양심·종교의 자유 등은 수용율이 떨어짐

【표 4 :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의 수용 현황】

인권위 권고안	정부(법무부) 초안				비 고
	과제수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형사사법	9	1 (11%)	6 (67%)	2 (22%)	
참정권	6	4 (67%)	-	2 (33%)	
언론·출판	2	1 (50%)	-	1 (50%)	
정보인권	8	6 (75%)	1(12.5%)	1(12.5%)	
집회·시위	2	-	-	2 (100%)	
양심·종교	4	2 (50%)	1 (25%)	1 (25%)	
학문·예술	2	-	2 (100%)	-	
거주·이전	3	1 (33%)	-	2 (67%)	
생명권	2	1 (50%)	-	1 (50%)	
소 계	38 (100%)	16 (42%)	10 (26%)	12 (32%)	

(내) 미수용 내용

1) 미수용 경향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영역은 인권NAP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영역임에도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사법개혁안에 들어 있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히 사회적 쟁점이 된 과제에 대하여 미흡

2) 주요 미수용

- 형사사법 영역에서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 발부, 기소 전의 구금일수 축소, 변호인의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인정 등에 있어서 수용하지 않았음
- 참정권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고,
-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은 대부분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있었음
-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 특히 사회적 쟁점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도 도입, 보안관찰제도 폐지, 사형제도 폐지 등은 수용하지 않았음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가) 수용현황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우리 위원회의 인권NAP 권고안과 대비해 보면, 대표적으로 주거권의 과제 항목이 전부 누락되었음
-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으로 분류하여 권고안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정부(법무부) 인권NAP 초안은 우리 위원회 권고안과 수용정도를 대비해 보았을 때 환경권(71%), 교육권(67%), 노동권(5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권, 건강권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음

【표 5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의 수용 현황】

인권위 권고안	과제수	정부(법무부) 초안			비고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사회보장권	9	1 (11%)	6 (67%)	2 (22%)	
노동권	14	7 (50%)	6 (43%)	1 (7%)	
건강권	4	1 (25%)	-	3 (75%)	
주거권	5	1 (20%)	-	4 (80%)	
교육권	9	6 (67%)	2 (22%)	1 (11%)	
문화권	7	2 (28.5%)	2 (28.5%)	3 (43%)	
환경권	7	5 (71%)	2 (29%)	-	
소 계	55(100%)	23 (42%)	18 (33%)	14 (25%)	

(나) 미수용 내용

1) 미수용 경향

-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권, 건강권에 대하여 미수용되었고, 교육권, 문화권, 환경권은 수용율은 높지만 여전히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미흡한 상태임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중요시 다뤄져야 할 사업집행의 소요기간과 예산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였음

2) 주요 미수용

- 사회보장권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
- 노동권 영역에서는 노동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및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음

- 건강권 영역에서도 지역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 배치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침해 예방 계획이 누락되었음
- 주권권 영역은 5개의 모든 과제를 누락시켰고, 5개의 과제 중 4개의 과제가 미수용되었음. 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인권NAP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거나 인권NAP의 주관부서인 법무부의 조정 통제 능력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교육권 영역에서는 학생정보인권에 대한 법제화 및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대하여 누락됨
-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정책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감시·참여가 있어야 할 것임

(4) 인권교육 강화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가) 수용 현황

【표 6 : 인권교육강화 및 국내외 협력체계 영역의 수용 현황】

인권위 권고안		정부(법무부) 초안			비고
세부영역	과제수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인권교육강화	13	10 (77%)	2 (15%)	1 (8%)	
협력체계구축	15	6 (40%)	3 (20%)	6 (40%)	

(나) 미수용 내용

【표 7 : 인권교육강화 및 국내외 협력체계 영역의 미수용 내용】

	미수용내용	해당부처
인권교육 강화	-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중앙인사위원회
	- 효과적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중앙인사위원회
	-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램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협력 체계 구축	-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시민사회 단체의 인적 자원 양성 지원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	행정자치부
	- 보편적 인권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외교통상부

- 민간·공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개발국 인권분야의 인적·물적 지원 활성화 및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외교통상부
- 인권분야의 국제적·지역적 협력기구 등과의 협조체계 마련	외교통상부
- 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권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법령 정비	법무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인권조약의 가입 비준	노동부
-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협력	법무부
-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법 교육 강화	법무부

다. 부처별 수용 현황

- 부처별로 수용여부를 보면 [표 11]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우리 위원회 인권NAP 권고안을 존중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행정자치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그리고 인권NAP의 주관부서인 법무부 등은 우리 위원회의 인권NAP 권고안을 반영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계획을 제출했거나 다른 영역에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되었던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지 않았음

【표 8 : 부처별 수용 현황】

	과제수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비고
교육인적자원부	28	20	5	3 (11%)	
통일부	6	2	1	3 (50%)	
외교통상부	4	1	2	1 (25%)	
법무부	35	17	7	11 (31%)	
국방부	13	9	3	1 (8%)	
행정자치부	8	3	-	5 (63%)	
문화관광부	12	2	5	5 (42%)	
정보통신부	7	5	1	-	
보건복지부	58	33	16	9 (16%)	
환경부	7	5	2	-	
노동부	48	28	11	9 (19%)	
여성가족부	14	9	1	4 (29%)	
건설교통부	9	5	-	4 (44%)	
중앙인사위원회	3	1	1	1 (33%)	
청소년위원회	2	2	-	-	
경찰청	6	3	1	2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5	-	1 (17%)	
기타	7	6	-	1 (14%)	
합계	273	155	56	61	

※ 과제별 중복 부처로 인하여 과제 총 합계(260개)와 다름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7. 5. 22. 정부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국내외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NAP 수립과정에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약자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미흡하였고, 정부의 인권NAP 수립 과정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와 여론의 수렴이 부족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이라 한다.) 수립은 2001. 5. 유엔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설립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2003.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권NAP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03. 4. 국회에 특별보고를 통하여 그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 10. 관련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인권NAP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2년 동안 기초현황 실태를 조사하는 외에 인권NAP실무팀 및 인권NAP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및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6. 2. 우리 위원회는 2007년~2011년간 5개년 계획으로 제1부 NAP의 개요와 추진방법, 제2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인권NAP안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2007. 5. 22. 인권NAP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인권NAP는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구체적 일정이 설정되지 않았다.

정부 인권NAP는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보편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국가보안법, 사형제

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등의 주요한 쟁점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우리 위원회의 인권NAP 권고안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으나, 정부 인권NAP는 장애인 보험가입 문제, 민간부문 고용차별 문제, 빈곤아동 보건의료제도 문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 문제,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인권NAP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의하며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 또한 5년간의 인권NAP 이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부터 추진될 2차 인권NAP 권고안을 준비할 것이다.

2007. 5. 23.

국가인권위원회